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정상철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A Comparativ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 of the 2nd Regional
Culture Promotion Plans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교수

공동연구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연구개요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해야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2020년 10월 현재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5개년 동안의 계획 추진을 시작함
 -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후 각 광역 시·도 지자체에서는 법정 의무인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5년간 실행될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추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나. 연구 목적

-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된 광역 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있음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과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별성을 도출함
- 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 체계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제언,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방안,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함
 - 해당 연구는 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님. 기본계획의 과제가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슈 및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 광역별로 비교하고 지역 공통의 의제 및 정책시행 초점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 시행계획이 대상이 되지만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 제2차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향후 계획에 근거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 및 시행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기본적인 연구의 시간적 범위임
- 본 연구는 검토 및 분석 대상이 되는 개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분석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함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적 환경의 변화, 2차 기본계획의 경과와 내용, 2차 시행계획 검토 및 분석, 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 연관성 분석,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함

나. 연구 방법

-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를 행함

〈표 1〉 연구 방법

문헌 분석	• 지역문화정책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지역문화 정책 관련 문헌 및 제반 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현장 동향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 검토 및 분석	• 각 광역 시·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정리 • 시행계획 비교 검토 및 분석 결과 정리 ※ 시행계획 주요 특징과 연결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 지역문화 관련 법정위원회 위원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 대상 자문 및 의견 수렴 •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2. 지역문화진흥 제도 및 정책 현황

- 지역문화 관련 주요 법률
 - 지역문화 관련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1994년 제정·시행한 『지방문화원 진흥법』,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3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을 포함하여 지역문화에 법령이 3개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은 틀을 갖추게 됨
 -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역문화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됨
 - 『지역문화진흥법』의 동법 6조와 3조에서 지역문화 중장기 발전 방향에 관한 법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이는 지역문화의 진흥에 대한 노력을 제도적 틀에서 행해지게 하여 법정계획으로써 그 지위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문화기본법』은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동법 8조)

■ 지역의 문화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역의 문화 관련 조례는 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지역 문화시설의 설립,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크게 대별 할 수 있음
- 총 17개 특별시·광역시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9개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기본계획에서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는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곳은 21개 기초자치단체로 파악됨

■ 지역문화정책 관련 조직 현황

- 2016년 5월 ‘생활문화진흥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써 설립되었으며 2017년 12월 ‘지역문화진흥원(구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어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재편하였음
- 지역문화 거버넌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음. 현재(2020년 10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개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00개 지자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음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

-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은 청년문화기획자, 시민문화기획자, 문화전문 인력양성, 문화이모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누적 배출 인력은 2019년 현재 지역문화전문 인력 수료생은 943명, 문화이모작 수료생은 893명임

- 이외에도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에서는 지역문화시설과 같은 지역 문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자를 양성하고 있음

■ 지역 문화재정 현황

-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문별 예산 중 지역문화의 진흥 및 일상문화 등에 대한 정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예산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문화예술부문) 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도 지역문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2020년 기준 일반회계에서는 지역문화정책 지원이 1,119억 원, 균특회계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은 2,8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에 2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3.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 2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24명으로 이루어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함
- 전국 10곳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지역순회토론회(2019. 7월~9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2019. 11)하여 토론회 및 자체평가 등에서 나온 여러 사항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년 2월 10일 기본계획을 발표함

■ 2차 기본계획의 체계와 내용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설정 아래, 자치·포용·혁신이라는 3대 핵심가치로 ‘스스로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가 포함되어 있음

-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지역의 문화재정을 현재 전체의 1.6%인 3조 7,000억 원에서 1.8%인 5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문화예술 관람률 격차를 기존 12.7%p에서 10%p로 낮출 것을 계획 목표로 제시함
- 4개 전략으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 기반 문화환경 조성,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설정함
- 아래 표와 같이 15개의 핵심과제,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2〉 2차 기본계획의 전략, 핵심과제, 세부과제

	핵심과제	세부 사업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 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재정 확충	지역 문화재정의 다각적 확충 지원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공동체 개선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달」 추진
		지역 특화대상 맞춤형 「문화의달」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핵심과제	세부 사업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지역문화콘텐츠의 보전·발굴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개성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희공간 등 문화재생 추진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 정책의 내실화·체계화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

4.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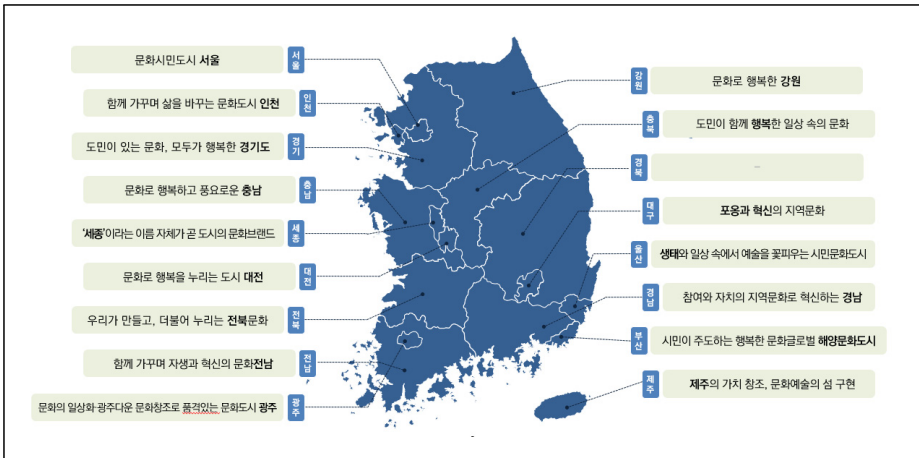
■ 2차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 위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맞물려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였으며 대체로 시군계획 반영, 자문회의, 설문조사, 공청회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계획을 작성함
- 공통적으로 1차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준용함. 이와 더불어 계획기간 내 추진할 시군별 사업과 전문가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2차 시행계획의 방향과 세부과제 도출하였음
- 2020년 10월 현재 17개 광역시도가 2차 시행계획을 모두 제출(단 본 연구 중간에 시행계획을 제출한 경북을 제외하고 분석함)

■ 각 시도 시행계획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어는 지향하는 가치, 사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향하는 가치에는 자생, 혁신, 참여, 자치, 포용, 창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의 용어로는 행복, 풍요, 품격이 있음. 지역문화 진흥을 만드는 과정을 강조하는 함께, 참여, 주도의 단어가 비전에 각각 사용됨

[그림 1]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서의 비전



- 광역 시도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대부분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시도에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정량적인 목표치는 재정비율 증대(경남, 전북, 충북), 문화 자치도 증가(인천), 삶의 질 증가에 대한 사회지표(인천), 사업 달성 정도(경남, 전북) 등임
- 2차 시행계획 추진 소요 예산
 -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조 3,698억 원임. 대전광역시는 8조 8,65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1,155억 원으로 가장 적음. 1개 광역시도의 평균 예산규모는 1조 7,580억 원임

5.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추진과제간의 연관성 분석

-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과제 간 연관성 분석 기준과 방법
 - 본 연구는 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계획들 사이에 공통적이거나 차별적인 내용을 탐색하고, 나아가 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내용이 시행계획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기본계획의 추진과제가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에서 반영된 내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해 지역이 공통적으로 문제로 인식하고 고민하는 지점을 정리함
- 기본계획에 비해 시행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진 과제들과 계획 수립 절차 및 추진 체계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차이점 또한 도출함
-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넷 마이너 프로그램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개별 시행계획의 핵심어를 도출하거나 핵심어간의 연결 및 인접관계를 시각화하여 계획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5.1. 기본계획상의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핵심과제 1: 지역문화 자치 기반 구축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의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과 관련, 시행계획들에서는 문화관련 조례 제정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행계획에서 신규 조례를 제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관련,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한 시군구와 광역 시도 간에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을 이용하여 매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점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를 계획함
 - 또한 명칭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지역단위의 문화관계 이해자들로 만들어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활용하여 수립된 계획의 추진과 관리를 계획함
 - 기본계획의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관련, 국가차원의 문화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에서는 지역 기관을 광역 주관처로 지정해주고 지역 단위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역문화정보 수집·관리·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핵심과제 2: 지역문화재정 확충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과제의 지역 문화재정 다각적 확충 지원 관련 및 절대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의 확충이나 기부금품 모집 활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준비는 아직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기본계획상의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 관련, 지역에서는 문화 재정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포괄적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부산)이나 지역문화 계획 계약(전북) 도입을 검토함
- 핵심과제 3: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과제에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위원 구성의 다변화, 시도 문화국장 회의 연 2회 개최를 통한 현안 점검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지역 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담기관 지정으로 구성됨
 - 지역에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명칭은 상이하지만 지역문화진흥위원회나 문화협력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군단위까지 통합적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광역문화재단이 이를 지원할 계획임
- 핵심과제 4: 지역문화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연관성
 - 시행계획에서는 지역문화인력 양성의 확대와 함께 양성된 인력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고 있음.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역문화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 위주의 인력 양성에 맞추어져 있음
 - 기본계획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강화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광역 문화 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초 문화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5.2. 기본계획상의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핵심과제 5: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의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는 이미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통해 상당 부분 생활문화센터가 건립되었으며, 운영 활성화

를 위한 전문 생활코디네이터 육성이나 생활문화 실태조사에 근거한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핵심과제 6: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의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에는 「문화의 달」 추진과 박물관 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을 담고 있음. 지역에서는 이미 「문화의 날」이나 「문화의 달」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화의 달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시함
- 예를 들어 광주는 ‘자치구별 작은음악회’,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 공공문화시설별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함

■ 핵심과제 7: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담고 있고, 시행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과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임.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꿈꾸는 예술터’를 지역에 유치하고 기초 지자체에는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 핵심과제 8: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에는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담고 있음. 지역 내 협력적 예술생태계 조성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소통 협력 채널을 만들고,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핵심과제 9: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의 연관성

- 지역에서 문화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정됨에 따라 향후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거나 건립하는 것에서 문화시설 배치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사례도 있음(전북, 충남)

5.3. 기본계획상의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 핵심과제 10: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이 간직한 기억을 발굴 및 보전하는 방향에서 지역어 보전, 미래유산 지원,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시행계획에서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차별적이거나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역학을 확립(경기도편찬원 설립)하거나 지역 방언을 계승 활용(제주도, 전북)하고 있음. 또한 가야역사문화권조사(경남), 진정성있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 사업(서울의 의정부 터 정비 등)이 있음
- 핵심과제 11: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에서는 개성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으로 구성됨
 - 지역에서는 개성있는 지역 문화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빙하는 사업이 많으며, 지역문화의 국제화는 주로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창의도시나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도시간 교류 등의 접근이 많았음
- 핵심과제 12: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세부사업으로 포함됨
 - 지역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별 콘텐츠클러스트,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계획에 담고 있었으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영화제나 축제, 문화행사의 관광 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관광사업계획이 많았음

5.4. 기본계획상의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핵심과제 13: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의 문화적 지역재생 및 활력 증진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및 문화재생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에서는 다수의 시도가 리빙랩 도입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음
 - 제주도는 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사업, 전북은 전북 문화예술 리빙랩, 경남은 문화예술 리빙랩, 부산은 청년 리빙랩, 울산은 울산생태문화 리빙랩, 전남은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주도형 관광 리빙랩을 만들 것을 구상함
- 핵심과제 14: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 중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은 문화도시 조성과 공간기반 지역문화정책의 내실화와 체계화로 구성됨
 - 16개 시행계획상 공간과의 연결어로는 시설, 생활문화, 유희공간, 연계 등이 빈도가 높지만 또한 역사문화, 재생, 문화도시 등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이 당면한 지역재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간관련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에서는 지역문화를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기반 문화정책으로 다양한 예술특화지구, 문화경관지구, 산업특화지구, 역사문화지구, 청년문화지구, 전통생활문화지구를 활용할 예정임
- 핵심과제 15: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 측면에서의 연관성
 - 기본계획 중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은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을 담고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취약지역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요 부족으로 문화기반시설 결핍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6. 2차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6.1.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

- 기본구상-시행계획-토론회의 3단계 과정으로 계획수립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따라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방향,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process)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로서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청사진이기도 함
 - 위의 관점에서 계획 수립에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하향식 방식이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방법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단체가 전 과정에서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3단계로 계획수립 체계를 만들 수 있음. 1단계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을 작성 및 공유하고, 2단계에서 위의 기본구상에 기초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함. 3단계에서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공유하는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의 시행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항을 확인함
-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체계 마련
- 17개 광역시도와의 통합적 협력적 구조 속에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17개 광역시도가 개별 용역이지만 협의체 와 같은 구조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
 - 시행계획을 개별 광역시도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차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시도와 더불어 시군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계획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본구상-시행계획-토론회의 3단계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

수 시점, 중간보고 시점, 최종보고 시점에서 광역단위 계획수립 주체와 시군구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음

6.2.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
 - 계획이 제대로 이행 가능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의 이행 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차후의 계획 수립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음. 시행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므로 계획 수립 이후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중간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의 실행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신의성실에 맡기는 상황임. 이와 같이 법정계획이지만 법에 따른 “형식”적 행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컨설팅, 중간평가를 비롯한 평가 등 일련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긴요한 과제임
 - 시행 계획 수립 이후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의무감을 갖고 계획의 시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장치로 판단됨.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에서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전체 시도와 공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5년”이라는 기간이 미래 문화정책 환경 예측 측면에서 너무 길고,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5년 계획 기간 중 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여타 문화관련 기본(시행)계획과 차별적인 사업모델 개발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지역이 다른 계획에서 다를 수 없는 사업을 시행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사업 모델 및 전략 과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계약 및 협약 방식의 사업모델 발굴
 -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 정부와 광역시도 간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등에 대해 계약이나 협약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전자는 지역관점에서, 후자는 국가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도적이고 혁신형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다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협약에는 사업의 철학과 방향, 과정 체계, 핵심 성과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계약 및 협약 방식의 사업모델 추진에 있어 인센티브 검토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틀 속에서 계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를 통해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센티브를 제공은 차별적이고 선구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측면, 지역이 갖는 편차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권역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음
- 구체적인 가능한 사업모델로 광역형 협력 사업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광역시도 간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 문화권 기반 공동협력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공모 사업들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광역시도간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광역시도간 협력사업은 중앙에서 필요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우와 광역시도 간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가 협력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중앙은 광역시도에 관련 요구되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필히 제시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중앙은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관련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광역시도와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6.3.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 지역관점에서의 시행계획 위상 정립
 - 기본계획의 경우, 지역문화과가 중심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개별 과와 타 부처의 소관업무들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진흥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함. 이는 지역에서 시행계획에 어느 범위까지 사업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다른 계획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 등 시행계획의 위상과 연결되어 있음
 -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문화 분야의 총괄적 기능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의 성격을 지님.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역문화 활성화가 포함된 문화 진흥 전반에 관한 5년 단위 국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최상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을 중심에 둔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은 중앙과 지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앙은 행정수도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함.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장소와 지역성을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과의 접목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범위를 생활문화,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문화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정의에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생활문화와 문화도시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관광산업, 인문학, 국제문화교류의 사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 이해당사자 간 관계를 수평관계에서 수평관계의 협력, 연계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고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광역시도간의 지역문화진흥정책 외부화 과정은 잘 만들어져 있다면,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내에서 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는 내부화과정이 더욱 탄탄히 만들어져야 할 과제가 있음
- 지역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과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이어 시군구 단위까지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음.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중 시군구와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되는 안에 대해서 광역시도가 시군구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광역시도와 시군구 간 정책 이슈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정책실행협의체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가능할 것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별, 직능별(행정, 연구, 예술 현장 등), 세대별 다양한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위상이나 인적 구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제2장 지역문화진흥 환경 분석 및 정책 현황	9
제1절 지역문화진흥관련 제도적 환경의 변화	11
1. 법령의 제정과 변화	11
2. 지역문화 조직 및 인프라 현황	15
3. 지역문화 인력 및 재정 자원 현황	16
제2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경과와 내용	18
1.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18
2.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	26
 제3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과제와 특징	31
제1절 수도권 및 강원도의 시행계획	33
1. 서울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33
2. 인천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35
3. 경기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38
4. 강원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40
제2절 호남권 및 제주도의 시행계획	43
1. 광주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43

2. 전라북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45
3. 전라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47
4.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49
제3절 충청권의 시행계획	51
1. 대전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51
2.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53
3. 충청북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55
4.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57
제4절 영남권의 시행계획	60
1. 대구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60
2. 울산시 시행계획의 과제와 특징	62
3. 경상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64
4. 부산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67
제4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기본계획간 연관성 분석	71
제1절 분석 기준 및 틀	73
제2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관성 분석	75
1. 비전과 목표 비교	75
2. 추진 과제의 연관성 분석	77
제3절 계획수립 절차 및 추진체계에서의 정합성 검토	95
1. 계획 수립 절차에서의 차이점	95
2. 추진체계에서의 차이점	96
제5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상의 이슈와 의제	99
제1절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01
1. 설문조사 개요	101
2. 설문조사 결과	102
제2절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의의와 추진 방향	117
1.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의의	117
2.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118
제3절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	120
1.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	120

2.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123
3.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127

참고문헌 /	135
--------	-----

ABSTRACT /	137
------------	-----

부록 /	141
------	-----

표 목차

〈표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주요 내용	13
〈표 2-2〉 생활문화관련 지역 조례 제정 현황	14
〈표 2-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15
〈표 2-4〉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문화이모작 사업 배출인력 누적 현황	16
〈표 2-5〉 지역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야 예산	17
〈표 2-6〉 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목표 및 추진전략	19
〈표 2-7〉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세부 과제 이행률	21
〈표 2-8〉 지역문화역량강화 부문 성과	22
〈표 2-9〉 지역 문화격차 해소 부문 성과	23
〈표 2-10〉 지역문화 발굴·창조 부문 성과	24
〈표 2-11〉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의 과제와 사업	27
〈표 2-12〉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28
〈표 2-13〉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의 과제와 사업	30
〈표 2-14〉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과제와 사업	30
〈표 3-1〉 서울시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33
〈표 3-2〉 인천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36
〈표 3-3〉 경기도 6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38
〈표 3-4〉 강원도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40
〈표 3-5〉 광주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43
〈표 3-6〉 전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47
〈표 3-7〉 제주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49
〈표 3-8〉 대전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51
〈표 3-9〉 세종시의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53
〈표 3-10〉 충북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56
〈표 3-11〉 충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58
〈표 3-12〉 대구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60
〈표 3-13〉 울산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62

〈표 3-14〉 경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64
〈표 3-15〉 부산시의 예산 재원과 규모	68
〈표 4-1〉 광역시도별 2차 시행계획에서의 목표	76
〈표 4-2〉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현황	96
〈표 4-3〉 광역 시도별 2차 시행계획 추진 예산 현황	97
〈표 5-1〉 조사 개요	101
〈표 5-2〉 참여자 광역시도 구분	102
〈표 5-3〉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개념과 내용	117
〈표 5-4〉 광역형 지역문화 협력사업 모델	127
〈표 5-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의 범위〉	128
〈표 5-6〉 광역시도에서의 문화관련 주요 조례 제정 현황	129
〈표 5-7〉 조례에서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문화예술진흥계획의 범위	130

그림 목차

[그림 1-1] 시행계획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절차)	7
[그림 2-1] 지역문화진흥관련 법률 제정 경과	11
[그림 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구성	26
[그림 3-1] 서울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34
[그림 3-2] 인천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37
[그림 3-3] 경기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39
[그림 3-4] 강원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1
[그림 3-5] 광주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4
[그림 3-6] 전라북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6
[그림 3-7] 전라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8
[그림 3-8] 제주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50
[그림 3-9] 대전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52
[그림 3-10] 세종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55
[그림 3-11] 충청북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57
[그림 3-12] 충청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59
[그림 3-13] 대구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61
[그림 3-14] 울산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63
[그림 3-15] 경상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66
[그림 3-16] 부산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69
[그림 4-1] 2차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의 구성	73
[그림 4-2]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서의 비전	75
[그림 4-3]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지역의 문화·예술의 포괄적 지원에 관한 조례	78
[그림 4-4] 생활문화지원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78
[그림 4-5] 16개 시행계획상에서의 통계, 데이터 등 연결어 맵	79
[그림 4-6]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운영현황(2019)	82
[그림 4-7] 16개 2차 시행계획에서의 인력, 양성 연결어 맵	83
[그림 4-8] 16개 2차 시행계획에서의 문화재단 등 연결어 맵	85

[그림 4-9] 16개 2차 시행계획에서의 리빙랩 연결어 맵	90
[그림 4-10] 시행계획상 ‘공간’의 연결어	91
[그림 5-1] 수립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충분한 준비 여부 조사결과	102
[그림 5-2] 수립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제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조사결과	103
[그림 5-3]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데 계획의 유용성과 필요성의 높음 정도 조사결과	104
[그림 5-4] 시군구 단위까지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동의 정도 조사결과	104
[그림 5-5] 시행계획 작성에 있어서 별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동의 정도 조사결과	105
[그림 5-6] 광역시도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속 계획 작성 방안 동의정도 조사결과	106
[그림 5-7] 시행계획 수립 방식	106
[그림 5-8] 시행계획 5년 계획기간 중 중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조사결과	107
[그림 5-9]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지원 필요성 조사결과	108
[그림 5-10] 기본계획만의 별도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조사결과	110
[그림 5-11] 정부와 광역시도간 실험적인 사업에 대한 계약 형태의 사업 추진 필요성 조사결과	110
[그림 5-12]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과정	123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법 6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6조 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시행령 제4조 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시행령 제4조 4항)
- 2020년 10월 현재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5개년 동안의 계획 추진을 시작함
 -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후 각 광역 시·도 지자체에서는 법정 의무인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함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5년간 실행될 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추진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2.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은 202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된 광역 시·도의 제2차 시행계획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있음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과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 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공통점과 차별성을 도출함
 - 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슈 및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광역별로 상호 비교하고 지역 공통의 의제 및 정책시행 초점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2차 기본계획의 자치, 포용, 혁신의 관점에서 2차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이슈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 실행에 필요한 추진 체계 마련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음
 -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제언, 시행계획의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방안,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대상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7개 광역 시·도 시행계획이 대상이 되지만 연구 시작 시점에 제출된 16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만을 연구대상으로 함
- 16개 광역시도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 충남, 대전, 충북, 울산, 대구, 경남, 부산, 전남, 전북, 광주, 제주도, 서울, 세종이며, 이들 16 광역시도(경북 제외)의 2차 시행계획을 연구 대상함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연구 검토 및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전국의 16개 광역 시·도로 설정함(경북 제외). 본 연구는 정책계획에 대한 연구로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지 않고 지역 범위만을 설정함
- 시행계획의 체계적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문에서는 권역별로 구성하여 서술함

〈표 1-1〉 2차 시행계획 제출 광역시도와 권역별 구성(2020. 9월 현재)

구분	권역별 구성	비 고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수도권 및 강원도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영남권	경남, 울산, 부산, 대구	경북 제외

■ 시간적 범위

- 제2차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향후 계획에 근거하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 및 시행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가 기본적인 연구의 시간적 범위임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검토 및 분석 대상이 되는 개별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분석은 최소한으로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함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2차 기본계획의 경과와 내용, 2차 시행계획 검토 및 분석, 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관성 분석,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구성함

2. 연구 방법

- <표 1-2>와 같이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2〉 연구 방법

문헌 분석	• 지역문화정책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지역문화 정책 관련 문헌 및 제반 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 및 검토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현장 동향 조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 검토 및 분석	• 각 광역 시·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정리 • 시행계획 비교 검토 및 분석결과 정리 ※ 시행계획 주요 특징과 연결성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리					
전문가 자문회의	• 지역문화 관련 법정위원회 위원 및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참여 전문가(5인) 대상 자문 및 의견 수렴					
	구분	경기연구원	추계예술대학교	부산문화재단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가톨릭대학교
	자문위원	김성하	이흥재	조정윤	지금중	임학순
설문조사	•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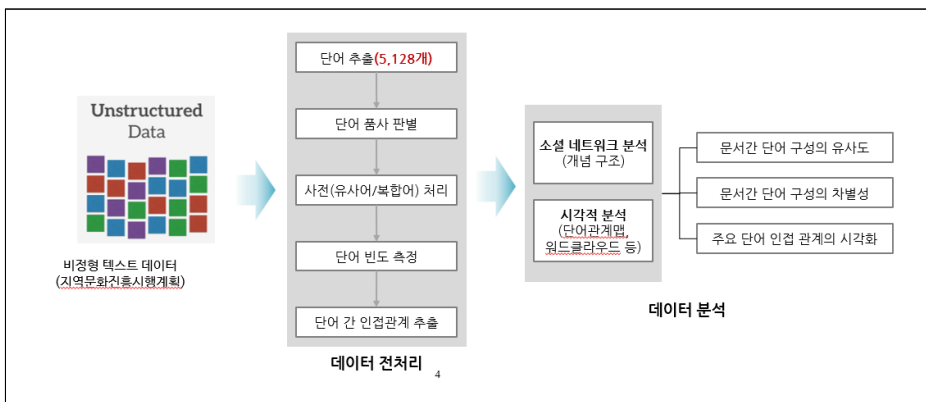
■ 문헌 분석

- 지역문화정책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및 정리
- 지역문화 제반 현황 자료에 대한 조사

■ 2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검토 및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 2차 기본계획 검토하여 시행계획의 내용 및 연결성 분석
- 이를 위해 넷 마이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주요 단어를 추출하고 계획에서 단어 간 인접 관계를 이용하여 단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 및 시각화함

[그림 1-1] 시행계획에 대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절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 지역문화 관련 법정위원회 위원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전문가들(5인)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수립 추진체계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58명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설문지 부록 참조)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2장

지역문화진흥 환경 분석 및
정책 현황

제1절 지역문화진흥관련 제도적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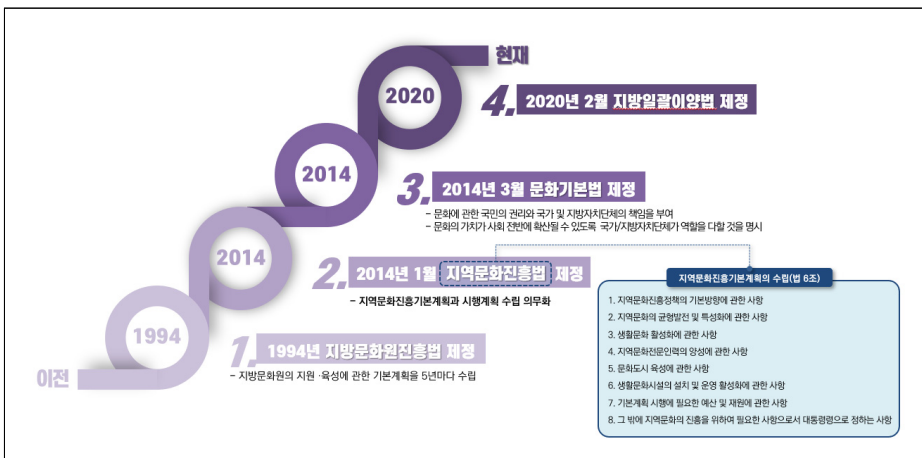
1. 법령의 제정과 변화

가. 법률의 제정과 변화

■ 지역문화관련 주요 법률

- 지역문화 관련 주요 법률로는 1994년 제정·시행한 『지방문화원진흥법』과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으며, 2014년 3월에 제정된 『문화기본법』까지 지역문화 법령이 3개로 확대되어 현재와 같은 틀을 갖 추게 됨
- 2020년 2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존 개별 입법에 의한 이양 방식에서 일괄이양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지역문화 관련 국가사무의 지방이 양이 추진됨

[그림 2-1] 지역문화진흥관련 법률 제정 경과



- 위와 같은 법률 제정으로 전반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필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의 역할과 의미가 부각되었음. 또한 지역으로의 권한 이행의 추세에 더불어 지역문화에 대한 업무와 정책적 추진행위에 있어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도적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
- 『지역문화진흥법』은 동법 6조와 3조에서 지역문화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법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음. 이는 지역문화의 진흥에 대한 노력을 제도적 틀에서 행해지게 하여 법정계획으로써 그 지위와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을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3가지로 제시(동법 3조)

■ 『문화기본법』의 제정

- 2013년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문화융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문화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됨.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음. 문화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었으며 국민의 문화 활동의 참여, 향유의 평등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적 접근 기회를 보장함
-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동법 8조)
- 동법 제4조 국민의 권리 조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함

■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

-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방일괄이양법』이 2020년 2월 제정됨. 『지방일괄이양법』에서는 16개 부처¹⁾소관의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을 담고 있음
- 당해 내용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을 담고 있으며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규정된 조항들을 시·도 조례로 개정 하는 등 전반적인 권한의 폭을 지방과 지자체로 이양함²⁾

〈표 2-1〉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일괄이양법』 관련 주요 내용

대통령령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주요 대통령령 개정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공립박물관 등록 권한 등이 '시도지사 → 시도지사,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으로 확대	박물관 등록 절차의 사무수행 주체에 '대도시시장' 포함, 고유 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세부사항을 정한 기존 조항 삭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지방문화원 설립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정한 기존 조항 삭제

나. 조례 제정 현황

■ 지역문화관련 조례의 유형

-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의 지원과 관련하여 포괄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제도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지역의 문화 관련 조례를 국가법률정보센터를 통해 검색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문화재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문화예술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지역 문화시설의 설립,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진흥에 관한 조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기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산림청 총 16개 부처이다.
 2)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변화의 경우, 기존 법령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만 업무 권한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도시의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으로 크게 대별 할 수 있음

■ 지역의 문화관련 조례 제정의 현황

- 총 17개 특별시·광역시·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 자치단체 중 139개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중, 지역문화에 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문화예술 진흥에서 별도 제정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도, 경상남도의 5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로 파악됨
- 기본계획에서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생활문화 지원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활문화 지원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는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문화도시조성과 관련하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청주시, 강릉시, 부여군 등 21개로 확인됨

〈표 2-2〉 생활문화관련 지역 조례 제정 현황

자치단체	조례 명	공포일자
서울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8.10.25
대구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9.30
대구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7.30
경기도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2019.01.14
경북 경산시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7.25
전남 광양시	광양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7.28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7.08.10
광주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9.29
광주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1.07
광주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9.09.25
광주시	광주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2015.12.28
충북 괴산군	괴산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05.13
경북 군위군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3.30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2.13
전남 나주시	나주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2017.03.22
경남 남해군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06.18
충남 당진시	당진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7.06.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0.11.20. 검색

2. 지역문화 조직 및 인프라 현황

■ 지역문화정책 관련 조직 현황

-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등의 해소 및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정책관을 지역문화정책관으로 재편하고 문화예술정책실 산하에 배치하여 문화·창조도시 조성 및 진흥,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도서관 정보정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업무를 담당함
-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하였음
- 현재(2020년 10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7개 모두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00개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 차원의 조직이 구성됨과 동시에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활문화에 근거, 2016년 5월 ‘생활문화진흥원’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써 설립되었으며 2017년 12월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지역문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 지역 문화시설로는 아래 표와 같이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예회관 등이 건립되어 운영 중임. 이들 시설은 지역의 문화 향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운영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음

〈표 2-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예회관
시설 수	126개	475개	6,735개	46개	33개	231개	101개	255개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p.67

3. 지역문화 인력 및 재정 자원 현황

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현황

-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이 핵심적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은 청년문화기획자, 시민문화기획자, 문화전문 인력양성, 문화이모작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누적 배출 인력은 2019년 현재 지역문화전문 인력 수료생은 943명, 문화이모작 수료생은 893명임

〈표 2-4〉 지역문화 전문인력 및 문화이모작 사업 배출인력 누적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역문화 전문인력 수료생	157명	313명	516명	726명	943명
문화이모작 수료생	433명	573명	672명	766명	893명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연구」, p.69

- 이외에도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에서는 지역문화시설과 같은 지역 문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자를 양성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 인력 지원사업에서는 지역문화 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문화 인력·시설 프로젝트지원, 지역문화인력·시설 역량지원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나. 지역 문화재정 현황

-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문별 예산 중 지역문화의 진흥 및 일상문화 등에 대한 정책·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 분석을 통해 지역문화 재정규모를 파악할 수 있음
- 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문화예술부문) 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도 지역문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역지원계정(구 경제 발전 계정)과 지역자
율계정(구 생활기반계정),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음³⁾
- 기금의 경우,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금의 신축적인 운용할 필요하
여 설치되는 자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역문화와 관련이 있음
- 지역문화 주요 사업은 일반회계, 균특회계, 기금을 통해 지역문화 및 문화
시설 지원, 문화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정책 지원, 예술향유 기회 확대 등의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

〈표 2-5〉 지역문화 관련 주요 사업 분야 예산

(단위: 백만 원)

회계구분		사업분야	2020년 예산
일반회계		문화·인문 진흥	21,291
		전통문화 진흥	37,252
		문화예술교육 지원	129,660
		지역문화정책 지원	111,975
		박물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8,858
균특회계	지역 자율 계정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80,09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14,843
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	21,527
		예술향유기회확대	167,18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p.23~107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2020년 기준 일반회계에서는 지역문화정책 지원이 1,119억 원, 균특회계
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은 2,800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문화예
술 지원에 21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그 외에도 각 회계 내에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은 지역과 관련
된 예산이 있음

3) 지역지원계정은 지역특화사업, 광역협력권 산업육성 사업, 지역인적자원 개발 등에 관한 출연·보조·융자 및 경비 지원이 해당되며, 지역자율계정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권 생
활기반 확충과 관련한 사업이 해당됨

제2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경과와 내용

1.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1.1.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계획 수립 경과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5년 주기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됨
-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2014년 2월 ‘지역문화진흥 2020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순회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5년 2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이름으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됨
-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의 걸림돌로 지역 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의 심화,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미흡,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지역 발전이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하에 문화 자치의 근간을 마련함

나. 비전과 정책 목표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과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와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한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 지역문화 균형 발전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이라는 3가지의 추진 목표를 설정함. 또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 발굴 창조로 제시함

〈표 2-6〉 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기반 구축(생활문화 참여율 '14년: 5% → '19년: 10%)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마련(문화기반시설 '14년 2,375개소 → '19년: 개소)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문화도시·문화마을 '14년:3개소 → '19년: 50개소)	
추진 전략	지역문화역량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 가치 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나.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 지역문화 역량 강화

- 추진 전략으로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세부 과제로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강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 체계마련을 계획함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지역단위 생활 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강화,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을 과제로 설정함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컨설팅 강화,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제시함

■ 지역문화 격차해소

- 추진 전략으로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세부 과제로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를 제시함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추진과제로는 지역문화 기초 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지원을 제안함
-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기초 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의 추진 과제를 계획함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 문화재원 지원방식 개선,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을 위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지역문화재원 다각화를 제시함

■ 지역문화 발굴 창조

- ‘지역문화 발굴 창조’의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역가치 발굴,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을 계획함
-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마을별 전통놀이 문화 복원 및 확산의 추진 과제를 제시함
- 지역가치 발굴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지역 고유의 한문화(K-Culture)사업 추진,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을 제시함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체계 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추진을 제시함

■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 이와 더불어 본 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로써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구축’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 과제

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지역문화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운영 추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운
영, 지역문화정책의 전달 및 집행체계 정립을 계획함

1.2.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과와 문제점

가. 1차 계획의 세부사업별 추진 실적

- 계획이 완료된 2019년 8월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제1
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세부과제 중 이행·수정 이행을 제외
한 미이행 세부과제는 112개 중 33개로, 미 이행률은 29.5%에 이름

〈표 2-7〉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세부 과제 이행률

전략	추진과제	세부 과제	이행여부			이행률
			이행	수정이행 (변경/축소)	미이행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9	6	0	3	66.7%
	1-2. 생활문화 진흥	12	10	1	1	91.7%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4	7	3	4	71.4%
지역문화 격차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9	6	1	2	77.8%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10	8	1	1	90.0%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9	3	2	4	55.6%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12	7	1	4	66.7%
	3-2. 지역문화 가치 발굴	10	4	3	3	70.0%
	3-3. 지역문화 브랜드 세계화 추진	16	10	0	6	62.5%
추진체계 정비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11	4	2	5	54.5%
총계		112	65	14	33	70.5%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연구」, p.9

- 기존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나 단일 기관에서 수행가능한 과제의 경우 이행
률이 높게 나왔으며,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조성, 한식·한옥 등을 활용한 한문화 3.0 사업과 같이 농림
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부처 간 협력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와 지역문화진흥의 개선, 지역문화인력 인증제(등록제)와 같이 법제도의 개선 및 사항,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이나 지역문화 관련 정책 등의 체계적 평가와 같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이행률이 낮았음

나. 1차 계획의 성과

■ 지역문화 역량강화

-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결과로 지역문화 기초 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을 비롯한 문화계획의 수립으로 계획과 정책 수립시의 효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 배치,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공동체 만들기, 동호회 지원 사업 등이 행해짐

〈표 2-8〉 지역문화역량강화 부문 성과

성과	세부내역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31개 지역양성기관 지정 1,173명 교육, 730명 수료, 121명 배치·활용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센터 157개소 조성지원 생활문화센터 53개소 88개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화의 집 49개소 생활문화활동지원
생활문화 활동 지원	문화소외계층 지원 180개소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 동호회 8,226개 지원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문화품앗이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150명) 봉사자대회 운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2017년 「지역문화실태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현황 파악 및 지역별 문화 수준 진단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 평가 실시(101건)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지역문화재단 권역별 포럼 실시(총 28개 문화재단 참여)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사업(총 16개 문화재단 참여) 기초·광역 문화재단 역량강화 연수(261명) 등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연구」, pp.9-11 참조

■ 지역 문화격차 해소

-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접근성이 낮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하였음. 또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을 포괄보조의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특화 매칭펀드를 실시함

〈표 2-9〉 지역 문화격차 해소 부문 성과

성과	세부내역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문예회관·지방문화권·문화의집) 374개 증가
지역문화시설 활성화·운영 지원	예술단체 우수 공연프로그램 지원(666건)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99건) 문예회관 레퍼토리 제작개발 프로그램 지원(2건)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 지원(10건) 공연장 상수단체육성지원(733개 단체) 도서관 야간 개장 확대(2019년 기준 525개소)
문화환경 취약 지역 확대	문화 취약지역에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연천, 정선, 고성 등 9개소)
문화소외계층 문화프로그램 확대	지역어르신 사회 참여 프로그램 지원(1,763건) 문화소외계층 공연 활성화 지원(23,000여회 공연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112개소)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포괄보조 형태로 지원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실시(65개 프로젝트, 펀드교부금 20.5억 원)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연구」, pp.9-11 (표로 재구성)

■ 지역문화 발굴·창조

- DMZ를 비롯한 새로운 지역문화루트를 개발하거나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문화를 통해 지역을 재생하는 새로운 시도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이 진행되었음

〈표 2-10〉 지역문화 발굴·창조 부문 성과

성과	세부내역
지역문화루트 개발	동·서·남해안과 DMZ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구성
지역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발굴현장 활용 교육프로그램(135회 운영) 생생·향교서원·전통산사·문화재야행 등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총 570개 사업) 궁궐활용사업(465천명 참여) 제4~5회 궁중문화축전(1,136천명 참여)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활용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추진(3,130명 운용)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육성	지역특화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144개 콘텐츠)
지역문화 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총 71개 기업 및 단체, 컨설팅 353회 등)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문화마을 사업지원(총 118개소), 문화도시 사업지원(총 104개소)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원 연계 추진(청주, 제주 등 5개소)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연구」, pp.9-11 (표로 재구성)

다. 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

- 각 시군 간 보유 콘텐츠의 격차가 존재하여 시군별 차별적인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컨설팅 등의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 문화재정 확충, 보조사업 등의 배분 등에서의 체계성 부족과 동시에 문화재정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으로 설정되어 지역의 자발적·주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지역 간 문화격차 상존
 - 문화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공급이 부족하고 대도시-읍면 간 문화예술 향유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됨
 - OECD 주요국 기준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은 1관 당 6만 명의 인구수를 담당하나, 한국 기준(2018년) 10.3만 명으로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19년에 행해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의 경우 문화행사 관람률이 84.1%에 해당하나, 읍면지역은 71.4%로 지역에 따른 문화향

유의 격차가 확인됨. 2019년에 행해진 지역문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격차·불균형을 현재 산재한 문제 중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지역민들의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역문화 협치구조 및 자율성 한계

- 현 지역문화의 진흥을 전담하는 법정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체계화된 정책 진행과 운영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음
- 계획의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단체에 이르는 소통 및 협력에서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이 부족하여 문화정책의 내용과 추진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공유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음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 문화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의 지역문화기관들 간 연결되지 않은 사업 진행으로 효율성이 낮았음. 세부 사업의 경우 소액 다건의 형태가 많아 교부되는 지역문화 관련 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자율성·권한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 지역문화의 획일화 및 일상 속 문화 참여 부족

- 지역문화진흥의 주된 참여자로 설정되는 지역 내 문화계 및 주민들의 낮은 인식 및 참여가 한계로 평가됨.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 중 하나로 생활문화참여율의 개선(기존 5%에서 10%로 확대)을 제시할 정도로 강조되었지만 1차 기본계획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짐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구축과 생활문화 참여의 개선 여부를 2019년 발행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일상 문화참여의 경우,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과 같은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높은 수준이나,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10.4%), 문화관련 동호회참여율(7.7%) 및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체험으로써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기반이 부족하다는 평가임

2.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내용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경과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광고·홍보·경영 분야 전문가와 지역활동가 24명으로 이루어진 ‘기획단’을 구성·운영함
 - 동시에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 10곳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지역순회토론회(2019. 7월~9월)’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후,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2019. 11)하여 토론회 및 자체평가 등에서 나온 여러 사항을 보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월 10일 기본계획을 발표함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체계
 - 지난 1차 기본계획인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주민의 낮은 인식과 참여, 지역인재의 육성과 활용, 지역 문화 재정의 확보, 지역별 차별화된 문화정책 등에 대한 후속 계획으로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작성함

[그림 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구성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설정 아래, 자치·포용·혁신이라는 3대 핵심가치와 4개 전략, 15개의 핵심과제, 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가. 비전과 목표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비전 아래, 자치·포용·혁신을 3대 핵심가치로 ‘스스로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를 설정하여 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함
- 2차 기본계획에 앞서 2018년에 발표된 <문화비전 2030>의 핵심가치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계승하고 포용적 지역문화 정책을 지향함
-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지역의 문화재정을 현재 전체의 1.6%인 3조 7,000억 원에서 1.8%인 5조 9,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도시와 읍면지역과 같은 지역규모에 따른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를 기존 12.7%p에서 10%p로 낮출 것을 계획 목표치로 제시함

나. 전략 및 과제

-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 첫 번째 전략인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재정 확충,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제시함

〈표 2-11〉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의 과제와 사업

핵심과제	세부 사업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 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
지역문화재정 확충	지역 문화재정의 다각적 확충 지원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

핵심과제	세부 사업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지역문화 역량 강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을 과제로 제시함
 - 지역문화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재정의 다각적 확충 지원,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를 제시함
 -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축,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을 제시함
 - 직문화 역량강화를 성취하기 위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를 설정함
-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 두 번째 전략인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확대,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제시함

〈표 2-12〉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핵심과제	세부 사업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생활문화 시설의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생활문화 동호회·공동체 개선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달」 추진
	지역 특화대상 맞춤형 「문화의달」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

핵심과제	세부 사업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책기능 강화

-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를 위해 세부적으로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생활문화 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을 구성하였으며,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로 물드는 10월 「문화의달」 추진, 지역 특화대상 맞춤형 「문화의 달」 활성화,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을 계획함
-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을,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예술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제시함
-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의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등의 과제 제시함

■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

- 세 번째 전략인 지역의 개성 있는 문화 발굴·활용을 위한 핵심과제로 지역 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을 제시
-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콘텐츠의 보전·발굴을 계획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음
-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과제에는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의 사업이 포함됨

〈표 2-13〉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의 과제와 사업

핵심과제	세부 사업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지역문화콘텐츠의 보전·발굴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개성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 네 번째 전략인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는 핵심과제로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발전 지원을 과제로 제시
-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 및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을 사업으로 제시
-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과제에는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 정책의 내실화·체계화가 있으며 지역별 균형 있는 문화발전지원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을 사업으로 제시

〈표 2-14〉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의 과제와 사업

핵심과제	세부 사업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
	유희공간 등 문화재생 추진
	지역 혁신 지원을 위한 포상제도 도입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 정책의 내실화·체계화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추진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3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과제와 특징

제1절 수도권 및 강원도의 시행계획⁴⁾

1. 서울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모두를 위한 모두의 문화
목표	시민의 행복한 삶, 삶을 위한 문화 발전

□ 전략, 과제, 예산

- 5대전략 13개 핵심과제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7,683억 원
- 연차별 예산은 1,984억 원('20) 3,351억 원('21) 4,114억 원('22) 3,809억 원('23), 3,569억 원('24)

〈표 3-1〉 서울시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계
1. 서울형 생활문화 활성화	63	63	71	78	85	360
1-1. 서울형 생활문화 민간 거버넌스 확산	17	15	15	15	15	77
1-2. 서울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33	35	43	50	57	218
1-3. 생활문화 축제로 생활문화 예술의 장 마련	13	13	13	13	13	65
2. 문화예술교육체계 구축	448	402	482	482	813	2,627
2-1.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추진	316	340	369	369	423	1,844

4) 개별 시행계획은 분량이 많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에서 시행계획 원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전-전략-핵심과제로 정리하면서 시행계획상에 있는 과제들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정리함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계
2-2.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32	62	113	86	390	783
3. 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 및 장르 지원	829	860	1,005	1,060	1,188	5,919
3-1. 예술인이 주인이 되는 예술정책 수립 지원	159	185	205	210	218	977
3-2. 문화예술 장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670	675	800	850	970	3,965
4. 문화시설 전략적 구축	557	1,863	2,318	1,952	1,395	8,085
4-1. 테마형 박물관 미술관 건립	419	466	386	253	295	1,819
4-2. 문화시설 건립	115	191	291	95	95	787
4-3. 대표 및 권역별 도서관 건립	15	1,199	1,633	1,596	996	5,439
4-4. 장애인 도서관 정책	8	7	8	8	9	40
5.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87	163	238	237	88	480
5-1. 역사문화자원의 진정성있는 발굴, 보존	21.6	98.5	171.1	169.1	20.1	480
5-2. 역사문화재 활용 관광자원화로 시민 향유기회 확대	63	64.7	67	67.7	68.2	212
합 계	1,984	3,351	4,114	3,809	3,569	17,683

□ 계획의 특징

- 문화예술 장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함(서울국악플랜 2025, 서울연극플랜 2025, 서울예술인플랜 2025, 서울무용플랜 2025)

[그림 3-1] 서울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
- 2025년까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총 15개소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함. 5대 권역의 교두보 역할 수행하는 5개 권역별(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 거점형 예술교육센터(10개소)와 지역특화 예술교육 기능을 수행할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5개소)를 조성함
-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발굴과 활용을 통한 역사문화도시를 육성함. 해당 계획에는 달쿠샤 원형 복원, 의정부 터 정비, 풍납동 토성 박물관 조성, 한양도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음
- 지역별 균형 잡힌 서비스 및 전문·특화된 정보제공을 위한 권역별 도서관을 건립함. 대표도서관(1개소/동대문) 및 권역별 도서관(5개소/서북·동남·서남(2),동북)

2. 인천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함께 가꾸며 삶을 바꾸는 문화도시 인천
목표	◆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 '19년 12억 원 → '24년 25억 원) ◆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인천사회지표: '19년 2.97점/5점 → '24년 3.5점/5점) ◆ 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인천사회지표: '19년 5.87점/10점 → '24년 6.5점/10점)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 16개 핵심과제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7,182억 원
- 연도별로는 2,212억 원('20), 2,791억 원('21), 3,785억 원('22), 4,3070억 원('23), 4,325억 원('24)

〈표 3-2〉 인천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문화자치 기반 조성	1,740.3	2,104.9	2,525.6	2,778.3	2,947	12,096.1
1-1. 문화자치 추진기반 구축	0.1	2	2	2	2	8.1
1-2. 지역문화 협력체계 강화	0.2	0.4	0.6	0.8	1	3
1-3. 문화자치 재정 확보	1,739	2,101	2,521	2,773	2,941	12,075
1-4. 문화자치 역량 강화	1	1.5	2	2.5	3	10
2. 문화적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170.6	197.6	213.6	226	241	1,048.8
2-1. 인천형 문화예술교육 강화	18	25	28	30	32	133
2-2. 지역별 생활문화활동 다양화	43	43	45	45	47	223
2-3.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리 증진	101	120	130	140	150	641
2-4. 문화다양성 증진 및 가치 확산	8.6	9.6	10.6	11	12	51.8
3. 지역문화자원 발굴·활용 진흥	165.5	178.5	186.5	194.5	209.5	934.5
3-1. 문화자원 발굴 및 융합적 활용 활성화	21	21	21	21	34	118
3-2. 지역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68	77	83	90	90	408
3-3. 생활권 로컬관광산업 육성	6.5	12.5	13.5	13.5	13.5	59.5
3-4. 스마트 마이스산업 특성화	70	68	69	70	72	349
4.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재생 추진	136	310	859	871	927	3,103
4-1. 지역특화 문화도시 조성 지원	4	6	8	10	12	40
4-2. 문화기반시설 전략적 확충	40	203	749	758	811	2,561
4-3. 문화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확대	92	100	100	100	100	492
4-4. 사회혁신형 문화활동 지원	0	1	2	3	4	10
합 계	2,212.4	2,791	3,784.7	4,069.8	4,324.5	17,182.4

□ 계획의 특징

- 다른 광역시도 시행계획에 비해 문화다양성 존중을 통한 포용적 문화도시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 제정('20), 이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예정.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인식조사 실시 계획함
- 인천 시민유산제도를 도입함. 시민들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공감하는 유산에 대해 인천시가 보호·보존·활용을 지원함

3. 경기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목표	◆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0년) ◆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 전략, 과제, 예산

- 6대전략,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7,182억 원
- 연도별로는 2,212억 원('20), 2,791억 원('21), 3,785억 원('22), 4,307억 원('23), 4,325억 원('24)

〈표 3-3〉 경기도 6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환경 조성	77.3	78.8	79.8	79.8	79.8	395.5
1-1.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마련	1.5	1.5	2	2	2	9
1-2. 도민 문화향유 확대기반 마련	60.8	61.8	61.8	61.8	61.8	308
1-3. 문화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5	15.5	16	16	16	78.5
2. 공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으로 도민행복 증진	29.9	35	44.6	34.7	35	179.2
2-1.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4.9	4.7	4.7	4.7	4.7	23.7
2-2. 예술인 지원	17.2	21.4	21.4	21.4	21.6	103
2-3. 문화소외계층이 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구현	7.8	8.9	18.5	8.6	8.7	52.5
3.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	261.6	272.6	273.7	258.7	268.7	1,358.3
3-1. 생활문화 시설 확충 및 활성화	88	101	101	101	101	492
3-2. 문화기반시설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96.6	95.6	96.7	96.7	106.7	492.3
3-3.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77	76	76	61	61	203
4.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통해 더불어 즐겁게	320.5	409	364	316	318	1,727.5
4-1.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경기도 위상 강화	248	351	304	254	254	1,411
4-2.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유산 활용	52	53	52	54	56	267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4-3.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으로 경기도 정체성 형성	20.5	5	8	8	8	49.5
5.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930	3,532.5	1,796.5	1,541	147	7,947
5-1. 경기도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마련	883	3,246	1,785	1,541	147	7,602
5-2.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47	286.5	11.5			345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 뉴노멀 마련	103	10	15	20	25	173
6-1. 경기도형 문화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 마련	103	10	15	20	25	173
합 계	1,722	4,338	2,574	2,250	874	11,781

□ 계획의 특징

- 문화시설 70%가 경기 남부에 편중되어 있어 경기 남북부 간 문화격차 해소
가 당면과제로 인식됨

[그림 3-3] 경기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경기방방콕콕! 예술방송국 운영 확대(On-Line 공연, 비대면(Untact) 문화예술교육 운영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문화 뉴노멀 마련을 추진함
- 경기도 도내 DMZ, 오산 독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기 등재된 남한산성과 수원화성의 체계적 복원 및 정비로 경기도 위상을 강화함
-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함

- 문화누림,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추진함. 도내 문화시설(공공 공연장,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도민 문화향유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람료 인하효과를 통해 도민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 및 문화시설 활성화, 환급받은 지역화폐 사용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기대함

4. 강원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로 행복한 강원도
목표	◆ 문화로 평화 → 힐링, 소통, 화합의 선진문화조성 ◆ 문화로 관광 → 도시재생, 지역 명소화 ◆ 문화로 경제 → 예술인 자립기반, 일자리 확대

□ 전략, 과제, 예산

- 5개 전략 과제에 12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8,733억 원
- 연도별로는 5,640억 원('20), 3,618억 원('21), 3,523억 원('22), 4,321억 원('23), 1,631억 원('24)

〈표 3-4〉 강원도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계
1. 선순환구조의 문화예술생태계 구축	355.84	342.44	336.9	202.65	236.99	1474
1-1.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	355.84	342.44	336.9	202.65	236.99	1474
2. 도민의 문화가 있는 삶 추진	2915.57	1644.69	1481.44	1158.32	1011.8	8211
2-1. 고령화 및 지리적 접근성한계 극복을 통한 문화소외 해소	302.95	454.1	317.95	66.14	166.84	1307
2-2.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한 문화 참여 기회 확대 환경 조성	2141.62	811.61	812.27	812.43	813.99	5391
2-3. 생활권 중심의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12.75	21.87	22.92	23.55	22.77	203
2-4. 지역 문화시설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358.25	357.11	328.3	256.2	8.2	1308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계
3. 신한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육성	947.76	1222.8	1284.26	2309.03	209	5972
3-1. 신한류 콘텐츠 발굴 및 육성	265.23	196	145.5	196	86	888
3-2. 글로벌 보편성을 갖는 강원도 대표 자원 발굴·육성	665.8	990.07	1090.63	2097.9	107.87	4952
3-3. 지역문화 콘텐츠발굴을 통한 문화 다양성 확보	16.73	36.73	48.13	15.13	15.13	131
4. 문화적 일자리창출	1420.55	408.06	420.19	651.08	173.64	3073
4-1. 단순한 정주여건 변화에서 문화적 재생사업 추진	207.27	241.06	136.39	16.28	4.16	605
4-2. 지역문화 재생사업과 강원도 자원의 연계로 글로벌 문화자산 추진	526.76	150	266.8	617.8	152.48	1713
4-3. 지역문화정책사업을 통한 문화일자리 창출 활용·확대	686.52	17	17	17	17	754
5. 언택트 문화환경 조성	미정	-	-	-	-	-
합 계	5,640	3,618	3,523	4,321	1,631	18,733

□ 계획의 특징

- 코로나로 인한 문화 활동 위축을 극복하고 온라인 콘텐츠 소비 등 비대면 참여 방식 확산을 위한 언택트 문화환경을 조성함
-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예술인 수당(기본소득) 도입 검토,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반영(20년 하반기), 기본소득액과 대상규모, 지급범위, 형태 등에 대한 공론화 후, 도입 추진이 예정됨

[그림 3-4] 강원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강원도 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도민 문화여가 실태조사 및 실태 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강조함
- 시군별 문화예술 특화 지원(자체기획사업 발굴 육성)을 추진함. 시군이 당해 주민의 문화수요에 기반하여 문화특화사업 및 우수사업 제안하면 도에서 심사 선정 후 다년간 예산 및 컨설팅 지원, 단일 시군이 아닌 복수의 시군 기획 공동 문화 협력사업 발굴·지원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를 대응하고 역사 지리적 문화정체성을 강화함
- 시행계획서에 있어 강원도의 주요 사업 계획 외에 시군의 주요 사업도 협의하여 계획에 별도 첨부됨
-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하는 사업과 문화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를 발굴 및 육성함

제2절 호남권 및 제주도의 시행계획

1. 광주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의 일상화·광주다운 문화창조로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목표	◆ 문화민주주의 실현 ◆ 문화적 지역재생

□ 전략, 과제, 예산

- 5개 전략 과제에 12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9,133억 원
- 연도별로는 4,013억 원('20), 1,577억 원('21), 1,046억 원('22), 2,235억 원('23), 402억 원('24)

〈표 3-5〉 광주시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197	189.4	147.7	76.5	122.6	712
1-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1	1	0.7	0.6	0.6	4
1-2. 지역문화 재정확충	181	173.6	132.2	61.1	107.2	655
1-3. 지역문화 협력체계 개선	2	2.1	2.1	2.1	2.1	10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12	12.7	12.7	12.7	12.7	42
2. 생활문화 활성화로 지역문화환경 조성	636	301.8	169.4	129.0	121.0	1313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69	55.4	11.4	11.4	7.4	155
2-2.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23	23.4	23.4	23.4	23.4	72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2-3.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22	7.5	7.5	7.5	7.54	52
2-4.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	53	53.0	53.0	53.0	53.0	265
2-5.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467	162.2	73.9	33.5	29.5	767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735	470.2	290.5	1802.6	65.1	3287
3-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존	2	2.3	2.3	2.3	2.3	122
3-2.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591	167	141.1	41.1	41.1	982
4.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추구	2,444	616.4	438.5	227.3	93.2	3820
4-1. 문화적 지역재생·활력증진	319.92	31.9	32.0	20.0	16.0	420
4-2.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지역문화연계사업	1,998	458.5	240.2	131.3	1.2	2830
4-3.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장	125	125.9	166.2	75.9	75.9	569
합 계	4,013	1577.8	1046.2	2235.6	402.1	9133

□ 계획의 특징

- 5.18 민주화 항쟁관련 사업은 광주의 정체성(민주, 인권, 평화도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이를 현재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연결시켜 사업화함
-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 인권 증진 활동 및 세계 인권교류 거점공간으로 조성함

[그림 3-5] 광주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비엔날레의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내실화 및 체계화 추진로서 광주의 문화도시 비전 확립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지방이양사업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13건(648억 원)에 대한 연차별 재정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을 준비함

2. 전라북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우리가 만들고, 더불어 누리는 전북문화
목표	◆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 (문화재정 비율:2019.1.2.% → 2024 1.8%) ◆ 시군 지역문화기반 격차 감소 (지역문화지수 표준편차 전국평균 수준) ◆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 (본 지정 1개 및 예비지정 3개 지역 이상)

전 략 과 제	핵 심 과 제
1. 지역 생태계 구축으로 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문화자치 제도 마련과 체계화 ② 안정적인 지역문화재정 확보 ③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활성화 ④ 지역의 공공·민간 역량 강화
2. 균형과 다양성으로 지역문화기반 격차 해소	① 문화향유격차 해소와 질적 도약 ② 예술창작 지원과 예술인복지 강화 ③ 성평등적 문화행정 혁신과 확산 ④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활성화
3. 지역문화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	①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 ② 문화유산의 생활 계승과 활용 ③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창출 ④ 문화적 지역재생과 도시브랜드 제고

□ 전략, 과제, 예산

- 3대 전략, 12개 세부과제로 구성
- 계획에 대한 예산 자료 없음

□ 계획의 특징

- 도-시군 간 계획 계약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이양 균특산업 중심으로 관련

- 시군 또는 시군이 연합하여 다년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방안을 마련하고, 도에서 심사 선정 협약 후 예산지원과 컨설팅 진행함. 향후 계획계약제도 연구(2021), 계획계약 도입 및 시범사업(2022), 확대(2023)할 계획임

- 다른 광역시도 계획에 비해 문화행정에서의 성 평등적 혁신과 확산에 대한 강조가 특징적임. 지역문화예술계에 대한 성 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 폭력 및 성차별 대응센터를 설립 및 운영함. 그 외에도 성 평등적 지역문화 정착 종합계획 수립, 경력단절 여성 예술인 지원 등이 있음

3. 전라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자생과 혁신의 문화전남
목표	◆ 자생, 기초가 튼튼한 문화전남 ◆ 소통,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전남 ◆ 혁신, 지역을 바꾸는 문화전남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1,319억 원
- 연도별로는 1,220억 원('20), 3,304억 원('21), 3,033억 원('22), 1,976억 원('23), 1,766억 원('24)

〈표 3-6〉 전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자생력 있는 전남문화 생태계 구축	55	59	32	32	33	211
1-1. 근거기반의 지역문화 구축	-	1	1	1	1	4
1-2. 지역 문화재정 확충 및 자치화	-	1	1	1	1	4
1-3. 전남형 문화거버넌스 구축	2	2	2	2	2	10
1-4. 문화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53	55	28	28	29	193
2. 누구나 즐기는 문화환경 조성	710	865	846	823	832	4,076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570	570	570	571	571	2,852
2-2.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2	3	3	3	3	14
2-3.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37	41	44	48	54	224
2-4.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21	74	36	38	44	213
2-5.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80	177	193	163	160	773
3. 남도다움이 돋보이는 문화 발굴·활용	423	2,333	2,085	1,068	865	6,774
3-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289	1,759	1,409	746	598	4,801
3-2. 남도문화의 미래 자산화	77	202	120	56	21	476
3-3.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57	372	556	266	246	1,497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4. 남도 발전을 견인하는 전남문화	32	47	70	53	56	258
4-1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지역 활력 증진	3	9	12	18	18	60
4-2. 거점 중심의 문화정책 추진	11	19	38	15	18	101
4-3.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지원	18	19	20	20	20	97
합 계	1,220	3,304	3,033	1,976	1,786	11,319

□ 계획의 특징

- 전남은 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계획에서 특징적임
- 전남 다도해 섬의 문화, 역사, 생물, 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가 섬·바다 정원을 조성하고, 국가 섬·바다 연구센터, 섬별 테마정원, 전시·홍보관, 섬 마을 재생 등을 추진함. 또한 섬의 가치와 문화 연구보존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 및 세계 섬 엑스포를 유치함
- 마한사와 남도문화 등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보전하여 문화적 역량을 축적하고자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수립,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 남도문예 르네상스 특화사업을 발굴함

[그림 3-7] 전라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제주의 가치 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
목표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155억 원
- 연도별로는 172억 원('20), 293억 원('21), 230억 원('22), 231억 원('23), 230억 원('24)

〈표 3-7〉 제주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7.5	30	28.5	29.5	28.5	124
1-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	2	0.5	1.5	0.5	4.5
1-2. 지역문화 재정 확충	1	21	21	21	21	85
1-3. 지역문화 협력체계 개선	-	-	-	-	-	-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6.5	7	7	7	7	34.5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82	130	68.5	68.5	68.5	417.5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4	9.5	9.5	9.5	9.5	42
2-2.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2	2	2	2	2	10
2-3.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24	24	24	24	24	120
2-4. 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13	13	13	13	13	65
2-5.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	39	81.5	20	20	20	180.5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40	46	46	46	46	224
3-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10	11	11	11	11	54
3-2.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10	10	10	10	10	50
3-3.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20	25	25	25	25	120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42	87	87	87	87	390
4-1.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	2	2	2	2	8
4-2. 공간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41	84	84	84	84	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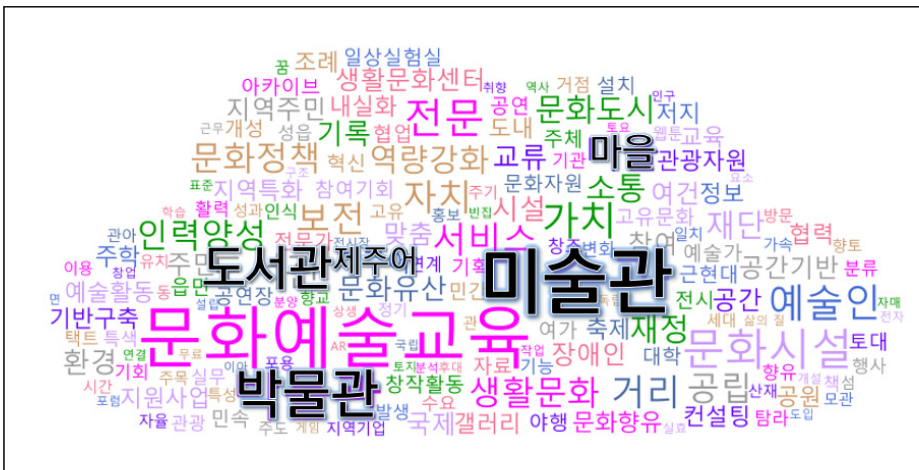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4-3.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 지원	1	1	1	1	1	5
합 계	171.5	293	230	231	230	1,155.5

□ 계획의 특징

- 제주어 보전·전승사업, 제주어대사전 편찬, 제주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 지역 언어 연구 국립기관 유치를 추진함. 제주어는 사라지는 언어 5단계 중 4단계(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어 있음 (UNESCO, 2010.12.8.)
- 탐라순력도, 돌하루방, 해녀 등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브랜드화와 각종 파생사업을 추진함

[그림 3-8] 제주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제3절 충청권의 시행계획

1. 대전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도시 대전
목표	◆ 자치, 내가 만드는 대전문화 ◆ 참여,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대전문화 ◆ 확산, 꿈꾸는 미래를 이어가는 대전문화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9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88,650억 원
- 연도별로는 1,000억 원('20), 22,955억 원('21), 17,875억 원('22), 30,900억 원('23), 15,920억 원('24)

〈표 3-8〉 대전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모두가 즐거운 문화자치 생태계 정립	0	485	490	520	550	2,045
1-1. 대전문화자치기반마련	0	375	330	335	340	1,380
1-2. 문화예술분야 재원확충 및 체계적 운영관리	0	110	160	185	210	665
2. 일상의 경험이 확대되는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1,000	10,310	9,125	23,270	8,560	52,265
2-1. 생활문화 공동체 활성화	0	1,010	665	690	220	2,585
2-2. 대전문화 통합정보전달체계 구축	0	5,000	4,550	18,600	4,700	32,850
2-3. 대전문화네트워크 확대	1,000	4,300	3,910	3,980	3,640	16,830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3. 대전다운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0	9,910	6,510	5,360	5,560	27,340
3-1.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대전만들기	0	6,050	2,750	2,950	3,150	14,900
3-2. 대전문화자원 재조명	0	3,860	3,760	2,410	2,410	12,440
4. 문화적 가치로 대전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주도	0	2,250	1,750	1,750	1,250	7,000
4-1. 문화적 지역재생 및 활력 증진	0	1,250	1,250	1,250	1,250	5,000
4-2. 대전문화예술계 팬데믹 대응체계 마련	0	1,000	500	500	0	2,000
합 계	1,000	22,955	17,875	30,900	15,920	88,650

□ 계획의 특징

- 대전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사업이 많은 것이 특징적임. 대표적인 것으로 사이언스 아트스쿨 운영과 융, 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공유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음

[그림 3-9] 대전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공간기반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문화지구 거점을 지정하고 문화지구별 통합 브랜드 개발로 연대 의식을 확대함
- 청년 문화인턴제를 도입하여 청년 직업을 체험 기회 부여, 문화예술 관련 유관기관과 청년(관련분야 전공자) 매칭으로 지역사회를 연결함

- 작품의 합리적 유통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작가 미술 장터 운영 및 예술품 대여 서비스(오픈 갤러리(Open Gallery) 서비스)를 지원함
- 대전의 정체성 정립과 특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대전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

2. 세종특별자치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시민이 만들어가는 여민락 행복도시 세종
목표	◆ 품격있는 시민자치 행복도시 세종 만들기 ◆ 창의적인 시민교육 행복도시 세종 만들기 ◆ 막힘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되는 시민문화도시 세종 만들기

□ 전략, 과제, 예산

- 5대 전략에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42,693억 원
- 연도별로는 10,917억 원('20), 8,651억 원('21), 8,924억 원('22), 7,605억 원('23), 6,836억 원('24)

〈표 3-9〉 세종시의 5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문화가 흐르는 신구도심 문화균형발전	10,902	8,588	8,838	7,567	6,836	42,693
1-1. 모두의 문화동행을 위한 소외없는 문화공간 네트워크 1032	10,580	8,330	8,570	6,940	6,170	40,590
1-2. 청춘조치원 문화캠퍼스다운 조성	1	1	1	1		5
1-3. 문화가 흐르는 신구도심 문화연계 여민락 블루스 문화벨트	321.3	257.0	267.3	626.3	626.3	2,098
2. 세종문화집현전을 통한 시민창의리더 양성8.9	8.9	50.9	60.1	130	13.1	146.1
2-1. 문화예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세종문화집현전	0.9	0.9	0.9	0.9	0.9	405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2-2. 시민 평생문화교육 확대를 위한 세종여민락아카데미	8.0	50.0	59.2	12.1	12.2	141.6
2-3. 세종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 MICE 개최	0	0	0	0	0	0
3.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시민권리 증진	1.5	9	21	21	21	73.5
3-1. 세종시민 문화권리장전 제정 및 문화행복지표 개발	0	0	0	0	0	0
3-2. 문화 소공동 테이블 세종문화주권회의	0	0	0	0	0	0
3-3.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일상의 여민락	1.5	9	21	21	21	73.5
4. 뿌리가 튼튼한 행복문화 생태계 구축	3.2	2.7	2.9	2.9	2.9	14.6
4-1. 세종 문화예술 SMART 플랫폼 구축	1	0.5	0.5	0.5	0.5	3.0
4-2. 문화예술활동 안정화를 위한 세종시 문화생태계 환경 구축	0.5	0.5	0.7	0.7	0.7	3.1
4-3.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세종 예술인 화수분	1.7	1.7	1.7	1.7	1.7	8.5
5. 환상형 도시가치를 살린 세종 정체성 확립	1.2	1.2	1.9	1.2	1.9	7.6
5-1. 시민들이 채워가는 문화스케치북 세종호수공원	0.5	0.5	0.5	0.5	0.5	2.5
5-2. 글로벌 세종 국제 아트&아키텍처 비엔날레	0	0	0.7	0	0.7	1.4
5-3. 세종대왕 문화브랜드화	0.7	0.7	0.7	0.7	0.7	3.5
합 계	10,917	8,651	8,924	7,605	6,836	42,693

□ 계획의 특징

- 도시문화 브랜드로 세종대왕과 여민락(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긴다)을 제시하여 신생 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세종 여민락 브랜드를 개발함. 세종대왕과 관련된 모든 문화예술 콘텐츠를 새롭게 발굴 및 정리하여 한글, 과학, 인물, 이야기 등을 연계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
- 문화를 중심으로 신구도심 공간의 균형발전을 모색함. 5년 계획 기간 중 사업 예산의 99%를 전략과제 1.문화가 흐르는 신구도심 문화균형발전에 배분함
- 세종시 문화행복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며 시민과 공유하여 세종시민 문화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을 구상함
- 세종시의 고령화 비중은 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세종어린이문화도서관 건립 및 세종형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세종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 MICE를 개최함

[그림 3-10] 세종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3. 충청북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도민이 함께 행복한 일상속의 문화
목표	◆ 도민 참여형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충북 자연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 충북 문화예술 협력 강화 및 연간 문화예산 2.0% 이상 확보 지속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에 17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2,882억 원
- 연도별로는 718억 원('20), 537억 원('21), 767억 원('22), 603억 원('23), 256억 원('24)

〈표 3-10〉 충북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도민 생활 가까이 있는 충북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279.8	295.7	526.7	366.7	109.7	1,578.6
1-1. 충북 대표 문화거리 (가칭) 한국의 몽마르트 언덕 조성	2	28.7	9.7	9.7	9.7	59.8
1-2. 증원문화 중심 박물관 건립지원·활성화	3.0	3.2	253.2	103.2	46.2	408.8
1-3. 도민 가까이 있는 문화공간 조성 확대	226.0	215.0	215.0	205.0	5.0	866.0
1-4. 찾아가는 생활문화 활동지원	48.8	48.8	48.8	48.8	48.8	244.0
2. 자연과 문화가 조화된 충북문화 세계화 추진	412.6	212.8	202.9	203.6	113.2	1,145.0
2-1. 충북 자연-문화 융합 힐링 관광지 조성	133.0	54.0	44.0	44.0	19.0	294.0
2-2. 충북 유네스코 문화재 활용 확대	110.3	17.5	17.6	18.3	2.9	166.6
2-3. 충북형 문화창조마을 조성	126.0	70.5	70.5	70.5	20.5	358.0
2-4. 충북 전통무예문화 브랜드화	1.6	1.6	1.6	1.6	1.6	8.0
2-5.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15.42	15.42	15.42	15.42	15.42	77.1
2-6. 충북 대표 축제 활성화	7.7	8.4	8.4	8.4	8.4	41.3
2-7.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	18.6	45.35	45.35	45.35	45.35	200.0
3. 뉴노멀 시대 대응 충북 문화예술(산업) 역량 강화	22.5	28.5	37.5	33.5	33.5	155.5
3-1. 코로나19·미래 대응형 충북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5.0	5.0	12.0	7.0	7.0	36.0
3-2. 충북 문화 전문인력 발굴·육성·활용 체제 확립	8.5	8.5	8.5	8.5	8.5	42.5
3-3. 문화예술 창업 지원체제 고도화	3.0	9.0	11.0	12.0	12.0	47.0
3-4. 유휴공간 활용 마을단위 문화활동 활성화	6.0	6.0	6.0	6.0	6.0	30.0
4. 충북 문화자치 협력체계 개선·문화재정 확충	비예산 사업					
4-1. 충북 문화예술 진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	-	-	-	-
4-2. 충북 지역문화 재정 확충	-	-	-	-	-	-
합 계	718.6	537.0	767.1	603.8	256.4	2,882.8

□ 계획의 특징

- 충북 시행계획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으면서 다른 시도 시행계획과 비교했을 때 차별되는 부분은 충북문화의 세계화 강조임. 충북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하는 페스티벌, 무예문화 브랜드화, 충북 대표축제(직지코리아 국제페스티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의 활성화가 충북화의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청주와 충북을 기록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함.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기록유산의 사후관리와 관련 연구·교육

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충북 청주에 설립함. 또한 충청북도 주요 도시 및 읍면에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을 통합한 라키비움 조성하고, 역사 기록사업, 마을 사서 양성을 통한 마을 문화기획자(라키비스트) 양성을 병행함

[그림 3-11] 충청북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 충청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충남
목표	◆ 행복, 모두가 행복한 충남 ◆ 풍요, 풍요롭고 쾌적한 충남 ◆ 창의, 창의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800억 원
- 연도별로는 119억 원('20), 270억 원('21), 272억 원('22), 304억 원('23), 834억 원('24)

〈표 3-11〉 충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도민 누구나 행복한 문화자치 실현	3.5	33.3	53.5	33.5	34.5	158.3
1-1. 지역문화 기반 마련	2.8	31.8	52	31	32	149.6
1-2. 지역문화 환경 개선	0.7	1.5	1.5	2.5	2.5	8.7
2. 풍요롭고 쾌적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26.5	74.5	49	100	656	906
2-1. 생활문화 정책 활성화	3.5	9	9	11	11	43.5
2-2.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체계 구축	5	5	5	5	5	25
2-3. 지역예술 선순환 체계 확립	18	27	27	27	27	126
2-4.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서비스 확대	-	7	8	8	613	636
3. 충남의 창의적인 문화자산 발굴과 활용	13	39	44	43.5	46.5	186
3-1. 고유한 지역문화 발굴과 보전	9	17	19	19	22	86
3-2. 개성있는 지역문화의 상품화 및 미래 자산화	1	9	10	9.5	9.5	39
3-3. 창의적 지역 콘텐츠, 관광 산업 강화	3	13	115	15	15	61
4. 미래의 가치를 열어가는 지역문화	76	124	126	127	128	581
4-1. 문화적 지역재생 활성화	-	7	7	7	7	28
4-2. 공간기반 문화정책 확산	18	55	55	55	55	238
4-3. 지역문화의 양극화 해소	58	62	64	65	66	315
합 계	119	270.8	272.5	304	834	1,800

□ 계획의 특징

- 생활문화의 날 지정) '문화가 있는 날' 활용, 도내 생활문화센터, 문화시설 등에서 「충남 생활문화의 날」 프로그램 운영, 장기적으로 생활문화협의체를 통한 생활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추진 등과 같은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함
- 충남도·시·군·유관기관·도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양방향식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위한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2020-2030)을 수립할 예정임
- 충남의 특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보전함. 충남의 금강문화, 내포문화, 백제문화, 충청유교문화, 해양문화 등 특화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충남 언어·문화·지명·지역학 조사 연구하여 충남 언어를 활용한 지도·스토리텔링 등 제작 등 충남 언어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함

[그림 3-12] 충청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제4절 영남권의 시행계획

1. 대구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목표	◆ 시민 삶에 문화가 있는 문화평등도시 ◆ 청년과 기업이 행복한 문화산업도시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 15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4,779억 원
- 연도별로는 749억 원('20), 848억 원('21), 1,100억 원('22), 642억 원('23), 1,442억 원('24)

〈표 3-12〉 대구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254	318	573	173	973	2,291
1-1. 예술인 창작 지원	41	41	41	42	42	207
1-2. 지역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113	109	109	108	108	547
1-3. 문화예술 공간 조성	77	144	400	0	800	1,421
1-4. 예술가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 지원	23	24	23	23	23	116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	146	147	152	152	152	749
2-1.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6	7	10	10	11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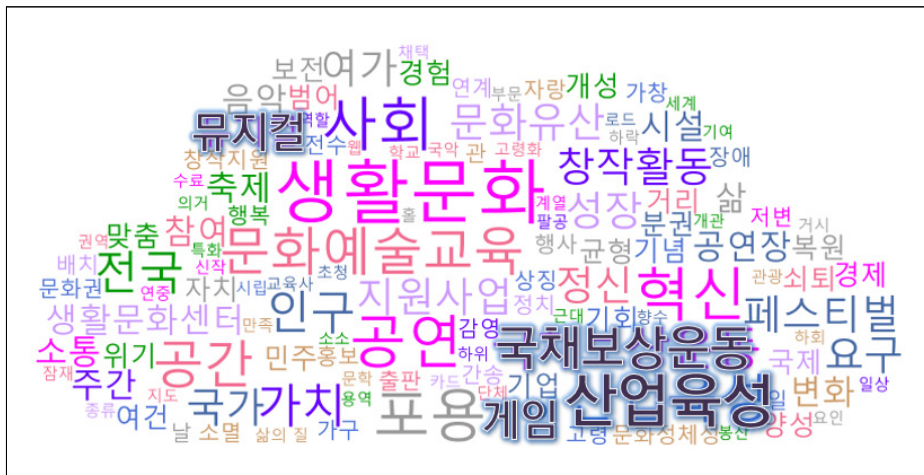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2-2.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26	26	28	28	28	136
2-3. 생활문화 동호회 공동체 지운	7	7	8	8	8	38
2-4.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107	107	106	106	105	531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발굴 · 활용	146	121	197	115	115	694
3-1. 대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	72	68	68	69	69	346
3-2. 문화유산 상징화를 통한 대구 문화정체성 확립	36	37	37	36	36	182
3-3.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38	16	92	10	10	166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203	262	178	201	201	1,045
4-1. 대구형 문화창의산업 육성	165	224	139	103	103	734
4-2. 공연문화도시 조성	12	12	13	73	73	183
4-3. e 스포츠 붐을 통한 게임산업 육성	7	7	7	7	7	35
4-4. 출판 영상 웹툰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	19	19	19	18	18	93
합 계	749	848	1,100	642	1,442	4,779

□ 계획의 특징

- 파급력 강한 미래 핵심 콘텐츠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해당 사업에는 DIMF, 치맥메스터벌을 대표 축제 글로벌화 및 산업화,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과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등 상징적 문화인프라 조성이 있음

[그림 3-13] 대구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미래 선도적 문화콘텐츠인 게임, 공연, e-스포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공연문화도시 조성 등을 통한 특화된 대구형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함

2. 울산시 시행계획의 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생태와 일상 속에서 예술을 꽃피우는 시민문화도시
목표	◆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 일과 여과의 조화를 통한 일상문화도시 ◆ 시민과 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자치도시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 12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3,904억 원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이 1,256억 원으로 가장 높음)
- 연도별로는 516억 원('20), 637억 원('21), 904억 원('22), 950억 원('23), 895억 원('24)

〈표 3-13〉 울산시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135.5	182	245.1	235.5	266.3	1,064.4
1-1. 시민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79.5	86	98	102.5	110	476
1-2. 시민문화 거점공간 및 플랫폼 조성	56	72	117	97	119	461
1-3. 시민문화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24	30.1	36	37.3	127.4
2.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258.5	293.6	322.5	327.9	303.6	1,506.1
2-1. 문화예술 다양성 및 교류 확대	12.4	16.4	17.3	18.5	19	83.6
2-2.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219	247	271	274	245	1,256
2-3. 문화예술 인력 양성 및 지원제도 확대	27.1	30.2	34.2	35.4	39.6	166.5
3. 문화예술의 사회적 확산	2.8	24.7	188.7	230.2	180.2	626.6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3-1. 울산 특화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5	11	10	13	39
3-2. 울산형 특화 문화공간 조성		13	170	210	156	549
3-3.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2.8	6.7	7.7	10.2	11.2	38.6
4. 참여와 교류를 통한 문화혁신	119.8	137.3	148.5	156.7	145	707.3
4-1. 문화자원 아카이빙 및 콘텐츠 개발	117.8	130.3	134.5	144.7	137	664.3
4-2. 시민 자치 문화도시 추진	2	5	10.5	9	5	31.5
4-3. 문화행정의 확충과 전문성 강화		2	3.5	3	3	11.5
합 계	516.6	637.6	904.8	950.3	895.1	3,904.4

□ 계획의 특징

- 울산시는 2차 시행계획에서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를 시민문화로 정의하고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시민문화는 단순 향유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예술 창조자로서 시민의 문화역량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음(시민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문화 거점공간 및 플랫폼 조성 등)

[그림 3-14] 울산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울산산업미래유산 플랫폼 구축, 울산명인·명장 라키비움 등과 같은 울산 특

- 화 콘텐츠로 산업과 예술, 생태와 문화를 연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동남권도시문화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 부울경 문화재단 라운드테이블 추진 및 공동사업 추진. 포항 및 경주를 연계하는 해오름동맹 협력 문화관광 콘텐츠를 공동 추진 및 확장함

3. 경상남도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참여와 자치의 지역문화로 혁신하는 경남
목표	◆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19년 0.54% → '24년 0.98%) ◆ 동부권·서부권 지역문화 지수 격차 감소 ◆ 문화도시 조성(5개), 마을공동체 지원(200개), 지역문화PD(150명)

□ 전략, 과제, 예산

- 4대 전략, 15개 핵심과제, 36개 추진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6,340억 원
- 연도별로는 815억 원('20), 2,210억 원('21), 2,573억 원('22), 2,396억 원('23), 8,346억 원('24)

〈표 3-14〉 경남의 4대 전략 및 핵심과제와 예산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1.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10	12	15	15	14	66
1-1.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0	0	3	3	3	10
1-2. 지역문화 재정 확충	4	4	4	4	4	20
1-3.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0	0	0	0	0	2
1-4. 지역문화 역량 강화	6	7	7	7	7	34
2. 모두가 누리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585	556	552	559	580	2,832
2-1. 생활문화 정책 재정비	341	307	309	314	334	1,605
2-2. 생활 속 문화참여 기회 확대	3	10	10	11	12	46
2-3.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27	27	27	27	27	135

(단위: 억 원)

구 분	'20	'21	'22	'23	'24	계
2-4.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58	46	46	47	47	244
2-5.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156	166	160	160	160	802
3. 미래를 위한 지역문화 창조성 증진	220	1,498	1,945	1,758	7,688	13,109
3-1.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18	1,293	1,739	1,552	7,482	12,084
3-2.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36	37	38	38	38	187
3-3.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166	168	168	168	168	838
4.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목표 실현	0	144	61	64	64	333
4-1. 문화예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목표 수립		2	3	4	4	13
4-2. 시민의 주체적 문화활동에 기반 한 문화도시 조성 지원	0	15	13	15	15	58
4-3. 청년·교육특별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수립	0	127	45	45	45	262
합 계	815	2,210	2,573	2,396	8,346	16,340

□ 계획의 특징

- 지역문화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광역·기초 문화재단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데이터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해당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광역·기초 문화재단 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역문화정책 실행의 핵심 주체인 지역 활동가, 광역·기초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종사자 참여 역량강화 교육, 광역 문화재단 내 ‘(가칭)경상남도지역문화정보센터’ 설치하여 지역문화 정보의 효율적 수집·관리·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민 제안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문화 정책 도민 디자인단을 운영함
-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문화예술분야에서 실천하기 위해 SDGs 코드와 접목한 기획형 예술 프로젝트 개발·추진, 지역문화정책·사업 사회적 가치 평가 시스템 구축, 시범운영을 추진함

[그림 3-15] 경상남도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4. 부산시 시행계획의 추진과제와 특징

□ 비전과 목표

비전	시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문화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	----------------------------

목표	◆ 해양문화도시 ◆ 융합창조도시 ◆ 포용문화도시 ◆ 문화협치도시
----	--

전 략 과 제	핵 심 과 제
1. 세계와 공존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①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문화자유구역 조성’ ② 국제문화교류 거점 확립 ‘해양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③ 시민 평화문화 공감을 위한 ‘남북문화교류 추진’
2.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역사문화도시’	①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해양유산 발굴과 활용’ ② 전통성 강화를 위한 ‘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 ③ 지역성 확산을 위한 ‘권역별 해양문화지역 조성’
3.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 문화도시’	① 다양성 확산을 위한 ‘경계문화예술활동 육성’ ② 시민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일상문화활동 지원강화’ ③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문화기회 확대’
4. 행복을 공감하는 ‘공유문화도시’	① 사회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가치 확산 ②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맞춤형 문화재생’ ③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문화 환경 조성’
5.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문화도시’	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문화시설 조성’ ② 지역문화 특화발전을 위한 ‘문화특구지정 추진’ ③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6.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플랫폼도시’	①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융합형 예술시장 창출’ ② 기술기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적 공간 조성’ ③ 시민중심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개선’
7. 문화예술인 권리를 보장하는 ‘창조도시’	①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문화예술인 창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②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인력 양성’ ③ 문화예술인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
8. 시민문화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① 시민 문화학습 기회확대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체계 개선’ ② 시민 문화학습 강화 ‘문화예술교육 플랫폼 구축’
9. 문화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행정 혁신도시’	①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시민문화권리 선언’ ②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재정 확대’
10. 참여와 협치를 구현하는 ‘문화분권도시’	① 문화분권 실천을 위한 ‘문화자치 기반 조성’

□ 전략, 과제, 예산

- 10대 전략, 26개 핵심과제로 구성
- 사업 수요 예산(억 원): 5년간 15,662억 원(국비 2,478억 원, 지방비 13,184억 원). 예산 계획에서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제시한 것이 특징적임
- 연도별로는 1,670억 원('20), 2,456억 원('21), 3,992억 원('22), 5,844억 원('23), 1,701억 원('24)

〈표 3-15〉 부산시의 예산 재원과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	'21	'22	'23	'24
재원	구분계					
국비	2,478	565	384	392	574	564
지방비	13,184	1,105	2,072	3,600	5,270	1,137
합계	15,662	1,670	2,456	3,992	5,844	1,701

□ 계획의 특징

- 해양문화도시, 남북문화교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 구축과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 북항거점 역사창의 문화벨트 조성, 유라시아 걸쳐 플랫폼 조성, 세계유산조성 사업 등으로 국제문화교류 거점 마련 및 국제 도시간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그림 3-16] 부산시 시행계획상의 핵심어



- 청년 문화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문화특구 지정 및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함
- 예산집행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금제 추진을 위해 현행 개별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문화예술 보조금사업 도입을 검토함
- 부산시민문화헌정 제정 및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제를 도입함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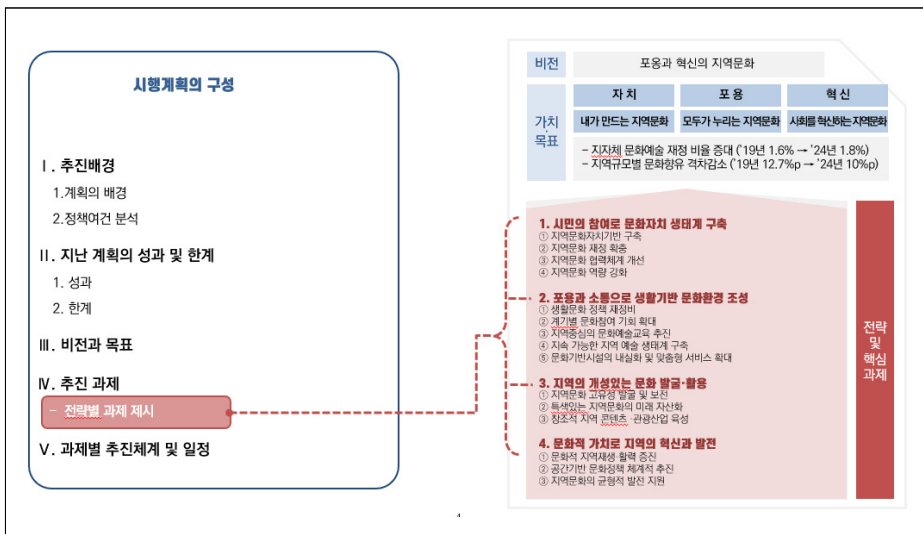
제4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기본계획간 연관성 분석

제1절 분석 기준 및 틀

-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의 구성 비교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시행계획은 기본계획과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음
 - 시행계획은 추진배경, 지난 계획의 성과 및 한계, 비전과 목표, 추진과제, 과제별 추진체계 및 일정으로 구성됨
 - 4장에서는 추진 과제에서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며, 비전과 목표와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두 계획간 비교를 보조적으로 분석함

[그림 4-1] 2차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의 구성



- 기본계획은 4개의 전략과제와 15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기본계획에
서의 4개 전략은 생태계 구축, 문화환경 조성,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문화적 가치의 지역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범주로 대동소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시행계획과 기본계획 과제 간 연관성 분석 기준과 방법
 - 3장에서 개별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서의 주요 특징을 도출한 반면 4장에
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연관성을 분석함
 - 연구는 개별 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계획 전
체에서 공통 및 구별 논의가 각각 가능한 사안과 내용에 대해 탐색하고, 이
에 대한 각 광역별 시행계획의 상호 비교 및 교차 검토를 위한 것이기 때문
에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분석을 진행함
 - 먼저 기본계획의 전략과제 및 핵심과제의 내용이 시행계획상에 어떤 식으
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함. 기본계획의 과제가 각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슈 및 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각 광역별 상호 비교하
고 지역 공통의 의제 및 정책시행 초점 등을 분석하여 정리함
 - 기본계획에 비해 시행계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과제들은 2절 3절에서 정리
하고, 계획 수립 절차와 추진 체계상의 비교는 3절에서 정리함
- 넷 마이너 프로그램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활용
 -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넷 마이너 프로그
램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함
 - 이를 통해 개별 시행계획의 핵심어를 도출하거나 핵심어간의 연결 및 인접
관계를 시각화하여 계획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 연관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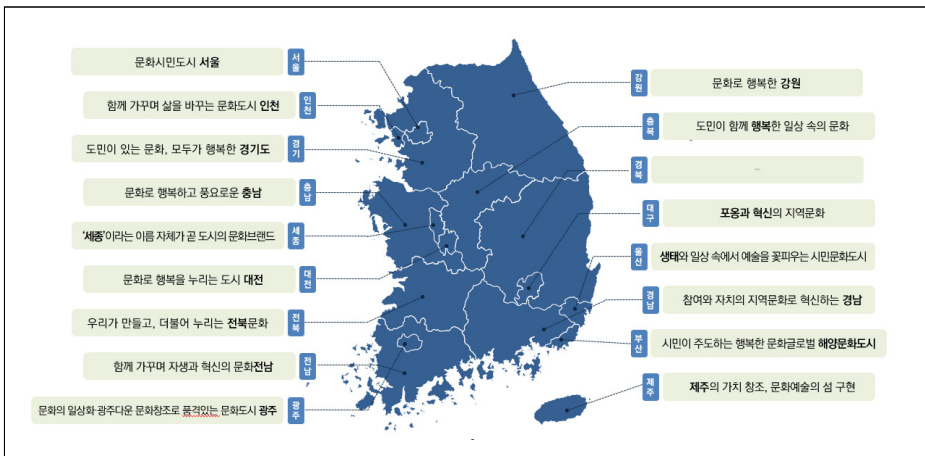
1. 비전과 목표 비교

가. 비전과 목표

1) 비전

- 2차 기본계획에서의 비전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임

[그림 4-2]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서의 비전



- 각 시도 시행계획의 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어는 지향하는 가치, 사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과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향하는 가치: 자생, 혁신, 참여, 자치, 포용, 창조
 -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행복, 풍요, 품격
 - 지역문화진흥을 만드는 과정: 함께, 참여, 주도

2) 목표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아래와 같이 2개의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함
 - 지자체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19년 1.6% → '24년 1.8%)
 - 지역규모별 문화향유 격차감소('19년 12.7%p → '24년 10%p)
- 광역시도별 시행계획에서 목표는 대부분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시도에서 정량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정량적인 목표치는 재정비율 증대(경남, 전북, 충북), 문화 자치도 증가(인천), 삶의 질 증가에 대한 사회지표(인천), 사업 달성 정도(경남, 전북) 등임

〈표 4-1〉 광역시도별 2차 시행계획에서의 목표

구 분	목표
강원도	◆ 문화로 평화 → 힐링, 소통, 화합의 선진문화조성 ◆ 문화로 관광 → 도시재생, 지역 명소화 ◆ 문화로 경제 → 예술인 자립기반, 일자리 확대
경기도	◆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2020년) ◆ 매년 300만 명 이상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경상남도	◆ 문화예술 재정 비율 증대('19년 0.54% → '24년 0.98%) ◆ 동부권·서부권 지역문화 지수 격차 감소 ◆ 문화도시 조성(5개), 마을공동체 지원(200개), 지역문화PD(150명)
광주광역시	◆ 문화민주주의 실현, ◆ 문화적 지역재생
대구광역시	◆ 시민 삶에 문화가 있는 문화평등도시 ◆ 청년과 기업이 행복한 문화산업도시
대전광역시	◆ 자치, 내가 만드는 대전문화 ◆ 참여, 모두가 문화시민이 되는 대전문화 ◆ 확산, 꿈꾸는 미래를 이어가는 대전문화
부산광역시	◆ 해양문화도시 ◆ 융합창조도시 ◆ 포용문화도시 ◆ 문화협치도시
서울특별시	시민의 행복한 삶, 삶을 위한 문화 발전
세종시	◆ 품격있는 시민자치 행복도시 세종 만들기 ◆ 창의적인 시민교육 행복도시 세종 만들기 ◆ 막힘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하나되는 시민문화도시 세종 만들기
울산광역시	◆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문화도시 ◆ 일과 여과의 조화를 통한 일상문화도시 ◆ 시민과 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자치도시
인천광역시	◆ 시민 문화자치도 증가(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 '19년 12억원 → '24년 25억원) ◆ 시민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인천사회지표: '19년 2.97점/5점 → '24년 3.5점/5점) ◆ 삶에 대한 행복도 증가(인천사회지표: '19년 5.87점/10점 → '24년 6.5점/10점)

구 분	목표
전라남도	◆ 자생, 기초가 튼튼한 문화전남 ◆ 소통,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전남 ◆ 혁신, 지역을 바꾸는 문화전남
전라북도	◆ 문화재정의 안정적 확보(문화재정 비율: 2019.1.2.% → 2024 1.8%) ◆ 시군 지역문화기반 격차 감소(지역문화지수 표준편차 전국평균 수준) ◆ 문화도시 지정 및 활성화(본 지정 1개 및 예비지정 3개 지역 이상)
제주도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의 섬 조성 추진
충청남도	◆ 행복, 모두가 행복한 충남 ◆ 풍요, 풍요롭고 쾌적한 충남 ◆ 창의, 창의로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
충청북도	◆ 도민 참여형의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 조성 ◆ 충북 자연과 지역문화 특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 충북 문화예술 협력 강화 및 연간 문화예산 2.0% 이상 확보 지속

2. 추진 과제의 연관성 분석

가. 기본계획상의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

1) 핵심과제 1: 지역문화자치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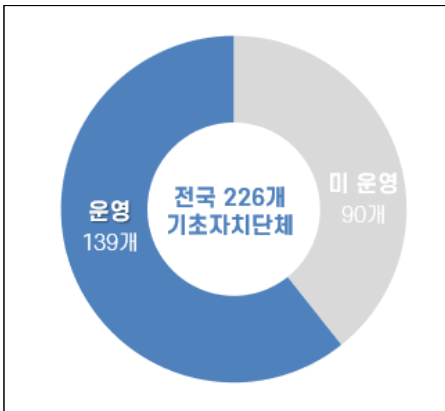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문화 법제도 개선,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지역문화 기초 데이터 생산·관리 개선의 세부 과제로 설정되어 있음

① 지역 문화 법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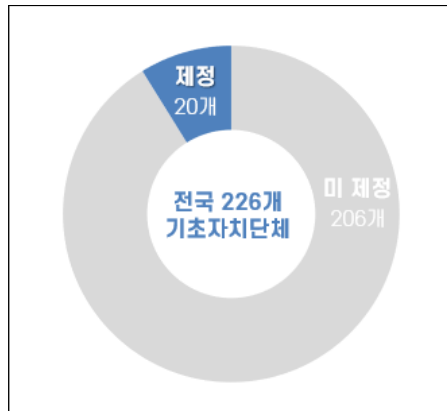
- 시행계획에서는 문화관련 조례 제정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행계획에서 신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전남),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추진(경기도),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세종시) 등이 있음
 - 이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진흥의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정 유도를 명시하였는데 이는 시행계획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광역시도에서는 기본적인 문화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이지만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19년 기준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지역 문화예술의 포괄적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9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21개만 제정된 상태임. 향후 시행계획에 의해 시군구단위로 조례 제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3]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지역의 문화·예술의 포괄적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림 4-4] 생활문화지원 및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 경기도는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 추진하며, 부산시는 중앙부처에 문화자치유구역 특별법 제정 건의,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공포함 (20.1.1.) 세종시의 경우 문화권리장전을 제정함
- 전북은 지역문화를 총괄하는 (가칭) 지역문화기본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지역문화 범주별로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여 지역문화 조례를 체계화할 계획임
- 인천은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자치와 분권, 협치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련 조례를 재정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

② 지역문화 계획 수립·관리의 개선

-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한 시군구와 광역 시도 간에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을 이용하여 매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를 계획함
- 명칭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지역단위의 문화관계 이해자들로 만들어진 지

- 전북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조례 개정을 통한 전북지역 문화협력위원회 신규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의 주기 단축 및 활용도 제고,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국가차원의 문화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에서는 지역 기관을 광역 주관처로 지정해주고 지역 단위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역문화정보 수집·관리·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illegible]

제4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기본계획간 연관성 분석

계 고도화와 정책 활용을 위한 (가칭) 전북문화 통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이를 통해 2차 시행계획에 부합하는 대표 통계를 개발하고, 도 자체적으로 행정 통계를 수집하고자 함 (문화예술계 성폭력 평등 실태, 지역 문화인력 노동실태 등)

- 지역단위에서 문화 분야에 특화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시행계획의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작성과 연계하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충남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2020~2030), 경남 문화비전 2030 수립, 부산 예술인 복지 2030계획 수립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핵심과제 2: 지역문화재정 확충

① 지역 문화재정의 다각적 확충 지원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문화재정의 다각적 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신규财源의 발굴, 새로운 방식의 사업개발 지원,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후속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일부 광역 시도에서는 지역 문화재정 비율 증대를 계획하여 목표치(성과지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규모의 확대를 계획 내용에 담고 있음
 - 계획의 성과지표에 재정비율을 제시한 예로는 경남('19년 0.54%→'24년 0.98%), 부산('19년 1.8%→'24년 2.3%), 충북(2.0% 이상 확보) 등이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의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는 지방문화재정 규모 목표치를 '19년 1.6%~'24년 1.8%로 설정함
- 지역의 문화재정의 절대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⁵⁾ 확충이나 기부금품 모집 활동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강원도는 문화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기금 조성 독려를 위한 매칭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북의 경우 지역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활동 확대를 계획함

5) 지역문화진흥법 제21조와 제22조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설치와 지역문화진흥재정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울산과 인천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각각 검토할 것을 시행계획에 담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준비는 아직 원론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광주·경남은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문화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음. 경남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5개 권역별 예술지원 협의회(5개 문화재단) 운영을 통해 유사 중복성을 방지하고 역할별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마련함
 - 대전의 경우 지역 문화재정의 대응성, 자율성 한계, 지방이양 결과로 대전 문화산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

②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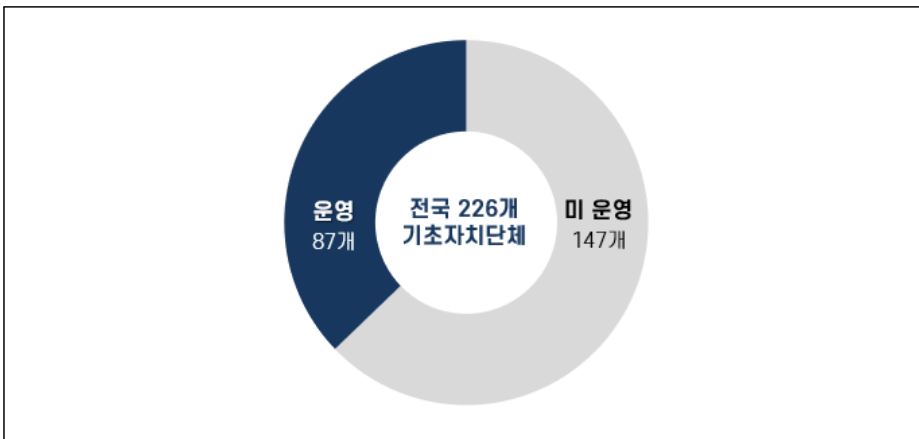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문화재정의 민주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문화재정 증대 지원, 지역문화재단 보조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문화재정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지역에서는 예산 편성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
 - 부산은 자체 보조사업에서도 포괄적 문화예술 보조금사업을 도입하며, 전북은 지역문화 계획 계약, 지역문화재단 총액 예산제도 도입을 계획함. 제주도의 경우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총액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함

3) 핵심과제 3: 지역문화 협력·전달체계 개선

- 기본과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례화 및 위원 구성의 다변화, 시도 문화국장 회의 연 2회 개조를 통해 현안 점검 및 공동 협력사업 발굴, 지역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전담기관 지정으로 구성됨
- 지역에서는 거버넌스 측면의 명칭은 상이하지만 문화협력위원회 등을 만들어 시군단위까지 통합적 협력을 계획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충남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인천의 지역문화위원회, 울산 지역문화진흥협의회, 전북 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이 계획됨
- 충남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는 제도기반, 문화도시, 생활문화, 문화인력, 문화콘텐츠분야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되며, 인천의 지역문화위원회는 지역문화정책 심의 의결 기구로, 전북문화협력위원회는 전북 시군별 문화 분야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직할 예정임
-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초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며 광역문화재단이 이를 지원할 계획임. 17개 광역 시도는 2020년 기준 모두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100개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운영 중에 있음⁶⁾

[그림 4-6]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운영현황(2019)



6)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ancf.or.kr/강원권\(11\)](http://www.ancf.or.kr/강원권(11)): 강릉, 속초, 영월, 원주, 인제, 정선,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횡성, 경기도(19):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평택, 하남, 화성, 인천(3): 부평, 서구, 연수, 경북(11): 경주, 군위, 봉화, 안동,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청도, 청송, 포항, 경남(7): 거제, 거창, 김해, 밀양, 사천, 창원, 통영, 대구(6): 달서, 달성, 동구, 중구, 수성, 북구, 부산(2): 금정, 부산진, 울산(2): 남구, 울주, 서울(22): 강남,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 전북(4): 고창, 완주, 익산, 전주, 강진, 담양, 목포, 순천, 영암, 전남(5): 강진, 담양, 목포, 순천, 영암, 충북(4): 영동, 제천, 청주, 충주, 충남(4): 당진, 공주, 아산, 천안

- 기본계획에서의 지역문화 역량 강화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은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여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직업분류체계 반영)하고 (가칭) 문화예술인 재개발원 건립 운영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지역문화인력 양성의 확대와 함께 양성된 인력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고 있음
 - 지역에서는 다양한 지역문화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 위주의 인력 양성에 맞추어져 있음
 - 충북은 마을문화 기획자 매개자 양성 사업 추진, 마을 사서/라키비스트 양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남은 문화다양성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권역별 배치를 계획함
 - 경남은 지역문화인력 활용을 위한 지역문화 PD제도 도입, 생활문화 매개인력 양성 및 파견 지원, 행복 문화마을 플레너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산은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인력 양성 사업이 포함됨

[illegible]

- 전북은 자체사업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인력 현장 배치,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문화인력 활동에 대한 보상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위와 같이 마을문화 기획자, 생활문화매개자,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인력 양성 등 사업별 맞춤형 인력 양성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문화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역량강화 교육과 다양한 재교육 강화로 양성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기본계획에서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강화는 지역문화진흥원 공공기관화 추진, 지역문화재단간 공동사업 발굴, 재단 종사자 교육 지원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에서는 광역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체로 기초 문화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광역-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경기도, 부산, 인천, 경남, 전남, 울산 등은 지역 내 문화재단 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사업을 개발하고자 함. 특히 울산은 부울경 문화재단 라운드테이블 추진 및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충남은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단 간 창의적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종사자 교육지원을 추진함. 대전은 향후 기초 문화재단 설립을 대비하여 대전 문화재단의 법적 위상 강화와 기능 및 역할 확대, 사업영역 확장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울산은 광역-기초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식적, 정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및 재단을 연계하는 울산문화진흥협의체를 구성하여 광역 및 구군별 중장기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 및 협력을 추진함
 - 현재 17개 광역 문화재단은 설립이 완료되었으며 이후 기초 문화재단이 지속적으로 설립될 예정이기 때문에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간 역할 정립이 중앙과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역할에 따른 특성화 사업 운영, 협력방안 발굴이 향후 과제임

The diagram illustrates a network of relationships between four central entities and their respective stakeholders:

- 문화재단 (Cultural Foundation):** Connected to a large number of nodes including 예술인 (Artists), 예술가 (Artists), 문예회관 (Cultural Center), 정보 (Information), 시민문화 (Citizen Culture),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메세나 (Mecenat), 현황 (Current Status), 공유 (Sharing), 서비스 (Service), 기업 (Company), 협력 (Cooperation), 협력 (Cooperation), 단체 (Organization), 연계 (Continuation), 통합 (Integration), 문화도시 (Cultural City), 실행 (Implementation), 도민문화 (Citizen Culture),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원 (Resources), 매개인력 (Mediator), 관광 (Tourism), 문화매개자 (Cultural Mediator), 관광 (Sightseeing), 협의회 (Association), 문화정책 (Cultural Policy), 공동 (Common), 설립 (Establishment), 교육 (Education), 문화예술교육 (Cultural Arts Education), 소통 (Communication), 자원사업 (Resource Project), 컨설팅 (Consulting), 지정 (Designation), 평가 (Evaluation), 수장고 (Treasury), 협력체계 (Cooperation System), 기능 (Function), 문화진흥 (Cultural Promotion), 자치 (Autonomy), 자치 (Autonomy), 네트워크 (Network), 재단 (Foundation), 주관 (Supervision), 참여 (Participation), 권역 (Region), 현안 (Current Issue), 광역문화재단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센터 (Center), 상호 (Mutual), 예술인 (Artists), 예술가 (Artists), 문예회관 (Cultural Center), 정보 (Information), 시민문화 (Citizen Culture),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메세나 (Mecenat), 현황 (Current Status), 공유 (Sharing), 서비스 (Service), 기업 (Company), 협력 (Cooperation), 협력 (Cooperation), 단체 (Organization), 연계 (Continuation), 통합 (Integration), 문화도시 (Cultural City), 실행 (Implementation), 도민문화 (Citizen Culture),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원 (Resources), 매개인력 (Mediator), 관광 (Tourism), 문화매개자 (Cultural Mediator), 관광 (Sightseeing).
- 거버넌스 (Governance):** Connected to nodes including 정책네트워크 (Policy Network), 소통채널 (Communication Channel), 자문 (Consultation), 조직 (Organization), 생활문화 (Living Culture), 생태 (Ecology), 산업 (Industry), 관 (Agency), 민간 (Private), 도민문화 (Citizen Culture),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원 (Resources), 매개인력 (Mediator), 관광 (Tourism), 문화매개자 (Cultural Mediator), 관광 (Sightseeing).
- 광역 (Regional):** Connected to nodes including 소통 (Communication), 자원사업 (Resource Project), 컨설팅 (Consulting), 지정 (Designation), 평가 (Evaluation), 수장고 (Treasury), 협력체계 (Cooperation System), 기능 (Function), 문화진흥 (Cultural Promotion), 자치 (Autonomy), 자치 (Autonomy), 네트워크 (Network), 재단 (Foundation), 주관 (Supervision), 참여 (Participation), 권역 (Region), 현안 (Current Issue), 광역문화재단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센터 (Center), 상호 (Mutual), 예술인 (Artists), 예술가 (Artists), 문예회관 (Cultural Center), 정보 (Information), 시민문화 (Citizen Culture),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메세나 (Mecenat), 현황 (Current Status), 공유 (Sharing), 서비스 (Service), 기업 (Company), 협력 (Cooperation), 협력 (Cooperation), 단체 (Organization), 연계 (Continuation), 통합 (Integration), 문화도시 (Cultural City), 실행 (Implementation), 도민문화 (Citizen Culture),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원 (Resources), 매개인력 (Mediator), 관광 (Tourism), 문화매개자 (Cultural Mediator), 관광 (Sightseeing).
- 기초자치단체 (Local Self-Government):** Connected to nodes including 문화도시 (Cultural City), 실행 (Implementation), 도민문화 (Citizen Culture), 문화자원 (Cultural Resources), 자원 (Resources), 매개인력 (Mediator), 관광 (Tourism), 문화매개자 (Cultural Mediator), 관광 (Sightseeing).

- 인천은 인천광역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근거로 한 생활문화 실태조사 실시 및 진흥계획 수립, 대전은 생활문화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충남은 생활문화 전달체계 개선으로 기관별 역할조정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할 것을 계획함. 구체적으로는 생활문화센터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주도 프로그램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재단은 정책개발, 프로그램 개발, 인력양성, 교류협력을 담당하고 문화원은 생활문화 강사지원, 어르신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강화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함

2) 핵심과제 6: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

- 기본계획에서 계기별 문화참여 기회 확대는 문화의 달 추진 과 박물관 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을 담고 있음
 - 지역에서는 이미 문화의 날이나 문화의 달을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차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화의 달을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시함
 - 광주·전남은 ‘자치구별 작은음악회’,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 공공문화시설별 ‘문화가 있는 날’ 등 지역 환경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함
 - 전남은 유아(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직장인(기업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협력 사회공헌 사업), 섬 지역 및 오지마을(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시군별 지역적 특성과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문화배달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함

3) 핵심과제 7: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추진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을 담고 있음
 - 지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과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상을 보임.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꿈꾸는 예술터’를 지역에 유치하고 기초 지자체에는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문화예술 교육 전용 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 인천은 인천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꿈꾸는 예술터) 조성하고 기초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설립 이후 광역센터-기초센터 간 역할 재정리를 검토하고 있음. 또한 인천문화예술교육주간('21)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계획임
- 경기도는 교과연계 교육연극사업으로 교육청과 도내 문화재단간 협력 수업을 운영(초등학생 4~6학년)할 계획을 갖고 있음

4) 핵심과제 8:지속가능한 지역 예술 생태계 구축

- 기본계획에는 예술 분야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을 담고 있음
 - 지역 내 협력적 예술생태계 조성으로 관련 유관기관간의 소통 협력 채널을 만들고,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제주도는 행정-제주문화예술재단-지방문화원-예술단체가 참여 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 소통 협력채널 마련하고자 하며, 세종시는 세종 모바일을 통해 세종시의 모든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세종 SM+ART 앱 개발을 계획함. 부산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3년 단위)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3년 단위)
 - 시행계획에는 예술인 창작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는데 중장기 예술인 복지 계획 수립, 예술인 전문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예술인 대상 금융 지원 등으로 대별됨
 - 인천은 예술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며, 대전은 대전문화예술 정보도서관 건립을 계획함. 대구는 예술발전소를 운영하여 입주 작가 지원 및 실험적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
 - 경남은 기존의 예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의 기초복지에서 나아가, 일자리, 의료, 금융의 다층적 예술인 지원 모델을 계획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생애 첫 전시회 지원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중 신진작가의 수요를 반영하여 첫 생애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함. 인천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금융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산은 지역 예술인 복지에 대한 장기 계

획인 「부산예술인 복지 2030」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5) 핵심과제 9: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 기본계획에는 문화시설의 전략적 확충,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열린 환경 조성을 담고 있음
 - 지역에서 문화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설정됨에 따라 향후 자체 자원 확보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문화시설을 유치하거나 건립하는 것에서 문화시설 배치에 대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마련하는 사례도 있음
 - 전북은 문화시설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 자체적으로 문화시설 조성 지원 기준을 비롯하여 기준에 따른 시설 조성 중장기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충남은 시군별 문화시설의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기초생활 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을 개정할 예정임

다. 기본계획상의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

1) 핵심과제 10: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이 간직한 기억을 발굴 및 보전하는 방향에서 지역어 보전, 미래유산 지원, 지역콘텐츠 디지털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
 - 시행계획에서는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차별적이거나 지역에 특화된 자원을 발굴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역학을 확립(경기도편찬원 설립)하거나 지역 방언을 계승 활용(제주도, 전북)하고 있음. 또한 가야역사문화권조사(경남), 진정성있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존 사업(서울의 의정부 터 정비 등)이 있음

2) 핵심과제 11: 특색있는 지역문화의 미래자산화

- 기본계획에서는 개성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을 담고 있음

- 지역에서는 개성있는 지역 문화를 기록화하고 아카이빙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마을 기록화사업과 함께 지역재생을 모색하거나(경남 등), 지역의 특화한 연고산업을 소재로 미래유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례(울산 산업미래유산 플랫폼)등이 있음. 시민유산제도를 도입하여 근대문화유산을 보호 활용하려는 계획도 있음(인천)
- 부산은 해양유산, 서울은 한양도성, 광주는 인권과 5.18 민주화 운동, 전남은 섬과 마한, 충북은 직지 기록유산, 충남은 백제, 대구는 국채보상운동, 울산은 산업유산과 생태자원, 경남은 가야, 세종은 세종대왕, 제주도는 제주어 등 다양한 지역문화를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미래유산화하려는 노력을 보임
- 지역문화의 국제화는 주로 세계유산 등재, 유네스코 창의도시나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도시 간 교류 등의 접근이 많았음

3) 핵심과제 12: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 기본계획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가 세부사업으로 포함됨
 - 지역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별 콘텐츠클러스트, 콘텐츠코리아랩, 음악창작소, 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영화제나 축제, 문화행사, 관광 간의 결합을 통한 융합형 관광사업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라. 기본계획상의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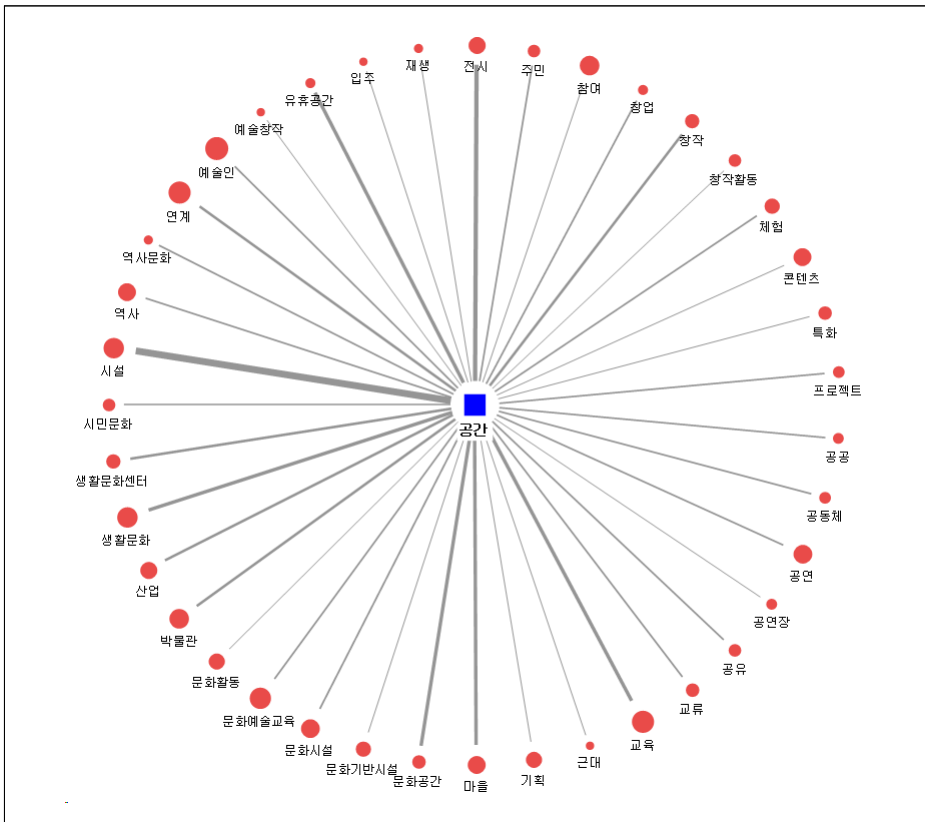
1) 핵심과제 13: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 기본계획의 문화적 지역재생 및 활력 증진에는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문화재생 추진이 포함되어 있음
 - 다수의 시도가 리빙랩 도입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음

- [illegible]

- 기본계획 중 공간기반 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은 문화도시 조성과 공간기반 지역문화정책의 내실화와 체계화로 구성됨
- 공간은 과거 시설 중심의 점에서 역사문화공간, 문화도시와 같은 면적 개념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음
 - 16개 시행계획상 공간과의 연결어로는 시설, 생활문화, 유희공간, 연계 등이 빈도가 높지만, 역사문화, 재생, 문화도시 등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이 당면한 지역재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공간관련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4-10] 시행계획상 ‘공간’의 연결어



- 지역에서는 지역문화를 특화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기반 문화정책으로 다양한 예술특화지구, 문화경관지구, 산업특화지구, 역사문화지구, 청년문화지구, 전통생활문화지구를 활용할 예정임
- 유희공간 문화재생과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므로 이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자체 지역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함
- 울산은 산업시설을 재생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울산문화예술공장)할 계획임. 충북은 지역 내 유희시설을 마을 아카이빙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음. 증평군과 제천시가 마을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마을 기록가 양성 교육사업을 선 수행 중에 있으며 차후 사업을 충북 전체로 점차 확대할 예정
- 충남은 공간기반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역사문화시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유기적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및 연계화시키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전남은 시군별 문화예술특구 조성을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3) 핵심과제 15: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

- 기본계획 중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발전 지원은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취약지역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수요 부족으로 문화기반시설 건립이 어려운 취약지역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 대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경남은 문화기반 취약지역에 대하여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로 찾아가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을 운영하고 전남도 도립 시립 공연단을 기획공연을 추진
 - 충남은 문화취약 지역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진행. 조사 결과 내 지역별 문화취약 서비스 공급의 표준화 및 선별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전북은 전북도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여 시군내 읍 면동 단위 문화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사람, 시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계획 공모형

사업을 다년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함. 또한 전북 문화취약지역에서의 문화 이용권을 사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

- 경기도는 경기북부 문화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관광공사, 경기 문화재단, 도평생교육진흥원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 협약 체결

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차이점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지만 일부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코로나 19 이후에 지역문화예술계가 언택트 문화환경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고 있음
 - 당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하거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대면 예술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강원도, 인천, 충북은 코로나 19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유 활성화 위한 온라인 제작시스템 구축하고 운영할 것을 계획함
 - 특히 충북은 창작과정, 공연과정을 디지털 아카이빙화하여 온라인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며 경기도는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을 운영 계획하고 있음
 - 경기도는 코로나 19로 연기된 공연이나 개봉 판로가 막힌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자동차 극장 방식 활용 공연 및 영화 상영 지원. 전남은 언택트 문화환경 조성으로 실감미디어 기반 다양한 스포츠 지도와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코칭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의 문화예술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 부산은 실험과 도전 정신의 청년문화 지원 강화의 하나로 청년문화특구를 설정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대전은 청년 중심 문화가치 발굴 및 파일럿 프로그램 추진할 문화인턴제, 청년 켄처플래너 운영을 계획함

- 세종은 청년 문화실험실 여민락가게를 임대 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고
대구에는 청년 지정예술가 육성 지원 계획이 있음
- 전북은 청년 예술인 지역착근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지역정착 수당을 지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충북은 청년 문화창작소를 만들어 청년들이 실험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지역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데이터 및 통계를 기초로 증거(evidence)기반 정
책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 데이터 및 통계 기반의 지역문화정책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
과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실성 높은 문화
정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시행계획에 드러남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역 자체 행정통계 등을 산출하거나 각종 실태조사
를 통해 정책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읽힘

제3절 계획수립 절차 및 추진체계에서의 정합성 검토

1. 계획 수립 절차에서의 차이점

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지역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 운영과 ‘지역순회토론회’ 동시 진행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및 주요 과제를 도출함
 - 1차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평가(‘19.5~10월), 및 설문조사를 실시함(지역토론회 참석자 342명 응답) 문화체육관광부·지자체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참여를 통한 시도별 제1차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함
 - 지역문화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문화기획자 등 24명으로 구성하여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신규 과제 발굴 등 정책을 논의함. 기본 방향과 과제 내부 토의, 지역 토론회에 패널 참석, 각 지역에서 자발적 진행된 포럼 등 각계 의견수렴·보완을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함(‘19.11.23~25)
- 10개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기획자,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 등 의견을 청취,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함(약 550명 참석)

나.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지역에서는 위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맞물려 계획 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하였으며 대체로 시군계획 반영, 자문회의, 설문조사, 공청회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계획을 작성함
 - <표 4-2>와 같이 강원도, 서울시, 세종시, 전남은 시행계획서 상 수립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수립절차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광역 시도를 제외한 시행계획 수립 절차상에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4-2〉 광역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절차 현황

구분	자문회의	설문조사	시군계획 반영	공청회
경기도	연구진으로 기획단 구성	모바일/온라인 116명	○	-
광주광역시	○	○	-	-
부산광역시	-	(시민1,600명, 점수가 200명, 온라인조사 716명)	-	구공청회10회
울산광역시	자문위원회운영	○(시민700명)		○
전라북도	-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대상 AHP 조사	○	○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위원회 운영	-	의견수렴	-
충청북도		○(시민800명)		

- 시행계획은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하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방법이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공통적으로 1차 시행계획을 평가하고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준용하여, 계획기간 내 추진할 시군별 사업과 전문가 의견을 상향식으로 수렴하여 2차 시행계획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음

2. 추진체계에서의 차이점

- 기본계획에는 추진체계를 주관과 협력으로 구분하고 있고 과제별 일정을 제시한 반면 소요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음
- 2차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야 함. 계획상의 추진체계에 있는 일정, 추진주체, 예산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광역시도별 차이는 있지만 5개년 내에 추진 일정을 설정하는 것은 모든 계획에 담겨져 있음
- 시행계획에 담겨진 사업들에 대한 관련 주체에 대한 부분도 일부 시행계획에서만 작성되어 있음(충남과 부산 등)
- 소요 예산은 전북 시행계획을 제외하고 모두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다만 부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 특징임

〈표 4-3〉 광역 시도별 2차 시행계획 추진 예산 현황

구 분	'20	'21	'22	'23	'24	계
강원도	5,640	3,618	3,523	4,321	1,631	18,733
경기도	1,722	4,338	2,574	2,250	874	11,781
경상남도	815	2,210	2,573	2,396	8,346	16,340
광주광역시	4,013	1577.8	1046.2	2235.6	402.1	9133
대구광역시	749	848	1,100	642	1,442	4,779
대전광역시	1,000	22,955	17,875	30,900	15,920	88,650
부산광역시	1,670	2,456	3,992	5,844	1,701	15,662
서울특별시	1,984	3,351	4,114	3,809	3,569	17,683
세종시	10,917	8,651	8,924	7,605	6,836	42,693
울산광역시	516.6	637.6	904.8	950.3	895.1	3,904.4
인천광역시	2,212.4	2,791	3,784.7	4,069.8	4,324.5	17,182.4
전라남도	1,220	3,304	3,033	1,976	1,786	11,319
제주도	171.5	293	230	231	230	1,155.5
충청남도	119	270.8	272.5	304	834	1,800
충청북도	718.6	537.0	767.1	603.8	256.4	2,882.8
합 계	33,468	57,838	54,713	68,138	49,047	263,698

- 전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차 시행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6조 3,698억 원임. 대전광역시로 8조 8,650억 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도는 1,155억 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기록함. 1개 광역시도의 평균 예산규모는 1조 7,580억 원임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5장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상의 이슈와 의제

제1절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지역 문화재단 담당자, 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URL 접속 방식으로 진행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58명임
 - 직무별로는 행정직 22명(37.9%), 연구직 12명(20.7%), 재단 등 지원조직 13명(22.4%), 기타 11명(19%)으로 구성되어 있음(기타 참여자는 작가 연출가, 사회적기업, 주민자치회, 시민조직, 전문예술단체, 공연단체, 문화기획자 등으로 이루어짐)

〈표 5-1〉 조사 개요

구분	조사 내용
목적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 제언 수렴
기간	2020년 11월 24일 ~ 11월 26일
대상	지자체 공무원, 지역 문화재단 담당자, 관련 연구자 등
방법	온라인 URL 접속
응답자	58명
설문내용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준비와 참여(3문항)
	시행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필요사항(3문항)
	시행계획 수립 방식(1문항)
	시행계획 수립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 관련(3문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인센티브 제공 관련(3문항)
	지역문화진흥협력위원회 구성 계획 관련 의견(주관식 1문항)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위상 및 차별성에 대한 의견(주관식 1문항)
	시행계획 수립 관련 기타의견(주관식 1문항)

〈표 5-2〉 참여자 광역시도 구분

강원	1명(1.7%)	경기	3명(5.2%)	경남	6명(10.3%)
경북	2명(3.4%)	광주	2명(3.4%)	대구	2명(3.4%)
대전	7명(12.1%)	부산	5명(8.6%)	서울	1명(1.7%)
세종	5명(8.6%)	울산	4명(6.9%)	인천	4명(6.9%)
전남	3명(5.2%)	전북	3명(5.2%)	제주	1명(1.7%)
충남	3명(5.2%)	충북	6명(10.3%)	총	58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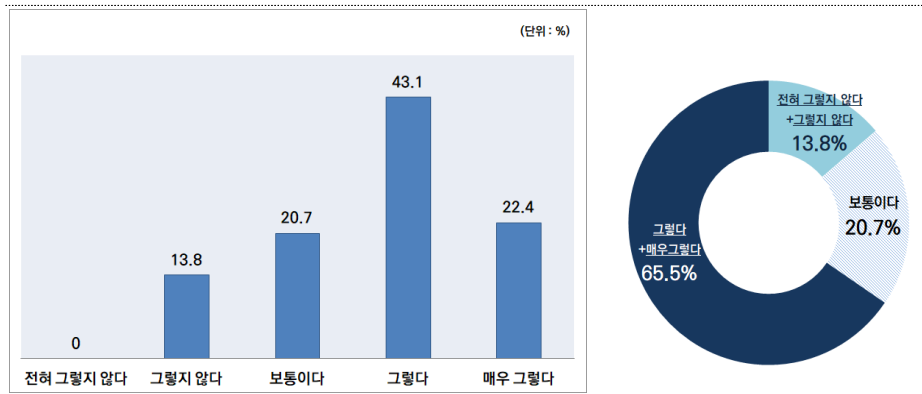
2. 설문조사 결과

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준비와 참여

1)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충분한 준비 여부

-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에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65.5%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43.1% + 매우 그렇다 22.4%)
 - ‘보통이다’는 20.7%, ‘그렇지 않다’는 1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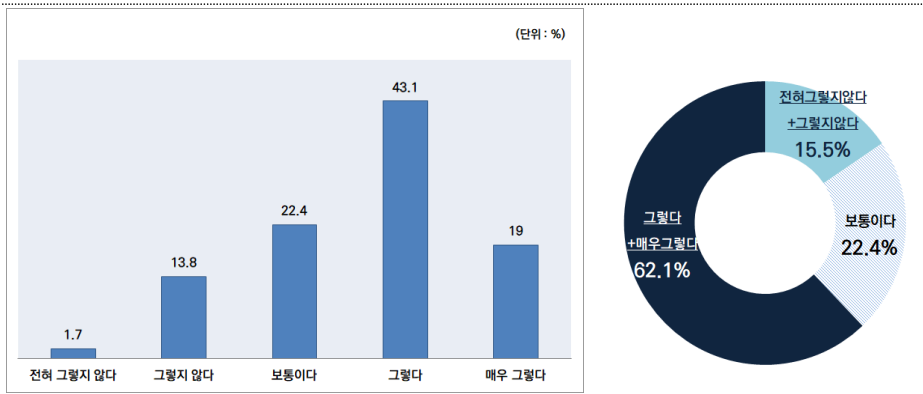
[그림 5-1] 수립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충분한 준비 여부 조사결과



2)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제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제반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62.1%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43.1% + 매우 그렇다 19%)
- ‘보통이다’는 22.4%, ‘그렇지 않다’는 15.5%(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다 1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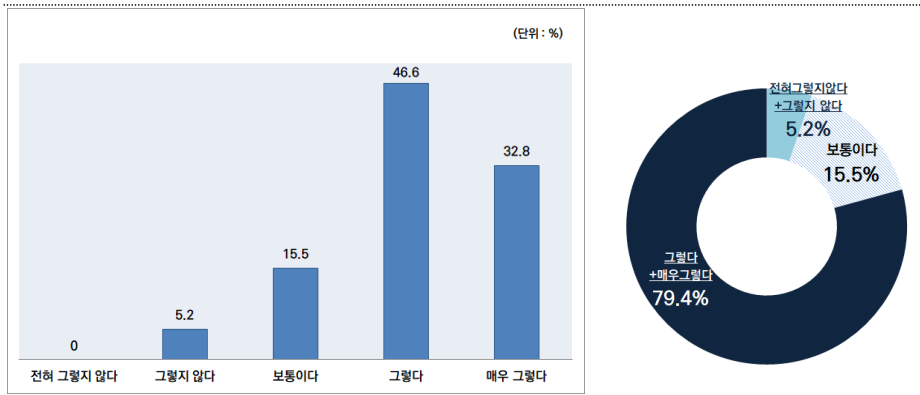
[그림 5-2] 수립과정에서 해당 광역시도의 제반 이해관계자의 참여 여부 조사결과



3)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데 계획의 유용성과 필요성의 정도

- 현재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해당 계획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높은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가 79.4%로 매우 높게 나타남(그렇다 46.6% + 매우 그렇다 32.8%)
- ‘보통이다’는 15.5%이며, ‘그렇지 않다’가 5.2%로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3]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데 계획의 유용성과 필요성의 높음 정도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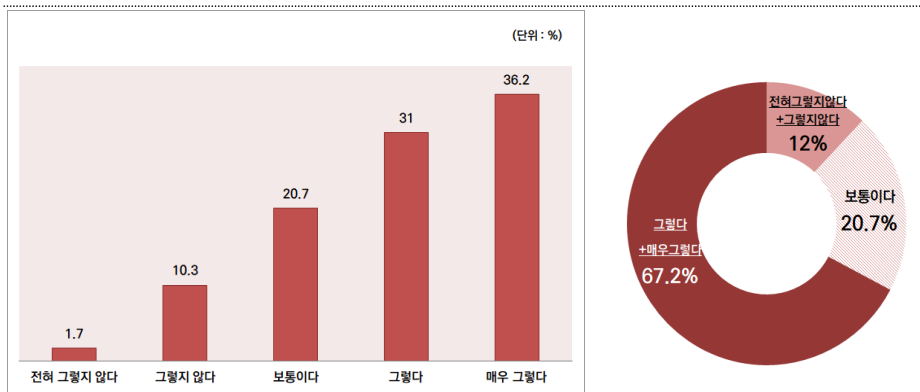


나. 시행계획 작성 과정에서의 필요사항

1) 시군구 단위까지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동의 정도

- 현재는 광역시도 단위 시행계획만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의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36.2%)
 - ‘보통이다’는 20.7%, ‘그렇지 않다’는 12%(전혀 그렇지 않다 1.7% + 그렇지 않다 10.3%)로 나타남
 -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시행계획의 범위를 시군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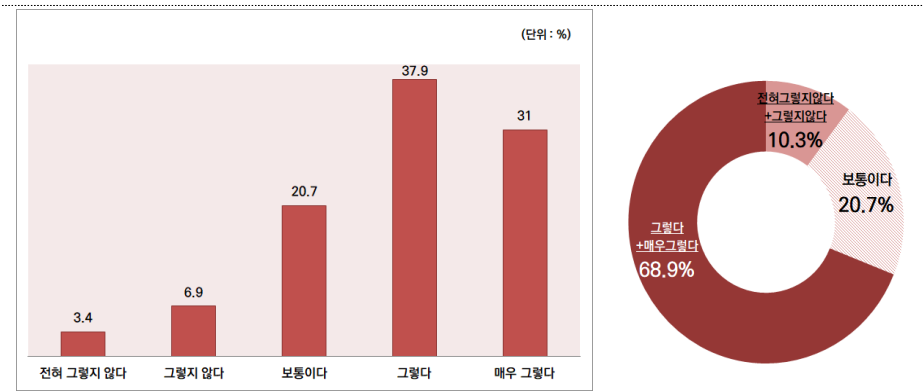
[그림 5-4] 시군구 단위까지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동의 정도 조사결과



2) 시행계획 작성에 있어서 별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동의 정도

- 현재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68.9%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37.9% + 매우 그렇다 31%)
 - ‘보통이다’는 20.7%, ‘그렇지 않다’는 10.3%로 나타남(전혀 그렇지 않다 3.4% + 그렇지 않다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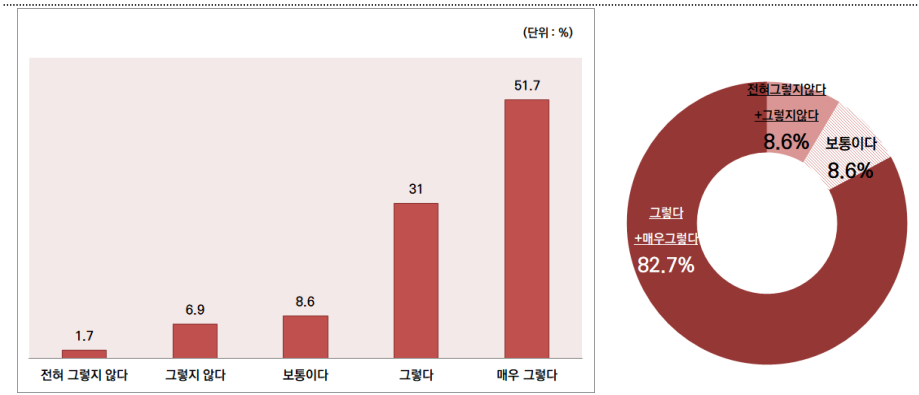
[그림 5-5] 시행계획 작성에 있어서 별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동의 정도 조사결과



3) 광역시도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라운드테이블 마련하여 논의 속에서 기본·시행계획을 동시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 향후 시행계획 작성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반 이해관계자들 간의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각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2.7%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31% + 매우 그렇다 51.7%)
 - ‘보통이다’에는 8.6%가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에도 8.6%(전혀 그렇지 않다 1.7% + 그렇지 않다 6.9%)가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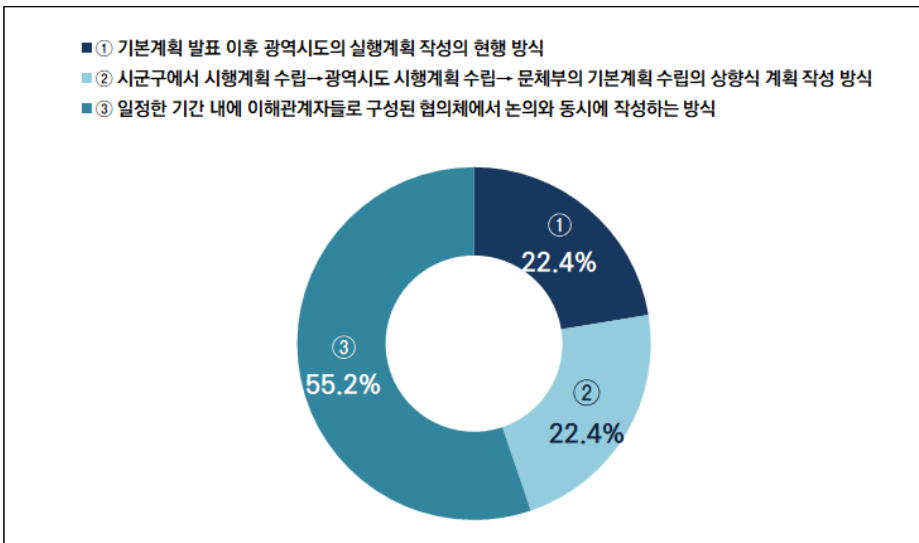
[그림 5-6] 광역시도별 연구용역 추진을 통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 속 계획 작성 방안 동의정도 조사결과



다. 시행계획 수립 방식

- 시행계획 수립 방식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 서 논의와 동시에 작성하는 방식’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본계획 발표 이후 광역시도의 실행계획 작성의 현행 방식’과 ‘시군구에 서 시행계획 수립→광역제도 시행계획 수립→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수립의 상향식 계획 작성 방식’이 22.4%로 동일한 응답률을 보임

[그림 5-7] 시행계획 수립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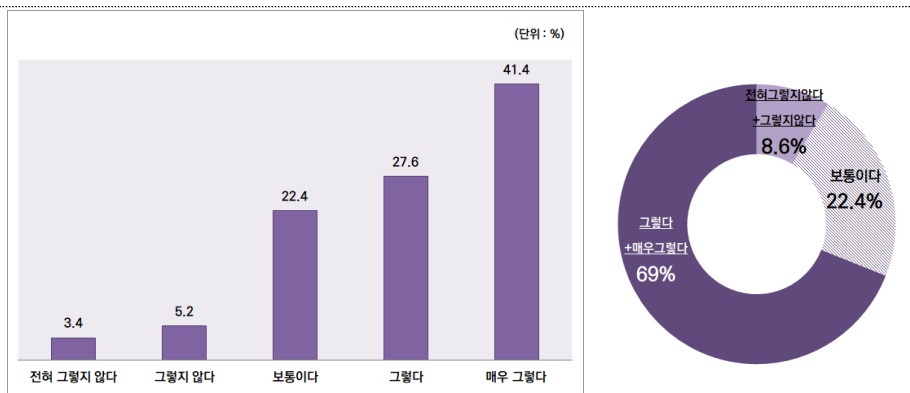


라. 시행계획 수립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 관련

1) 시행계획 5년 계획기간 중 중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 시행계획 5년의 계획기간 중 중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9%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27.6% + 매우 그렇다 41.4%)
 - ‘보통이다’에 22.4%가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에 8.6%(전혀 그렇지 않다 3.4% + 그렇지 않다 5.2%)가 응답함
 - 해당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1.4%로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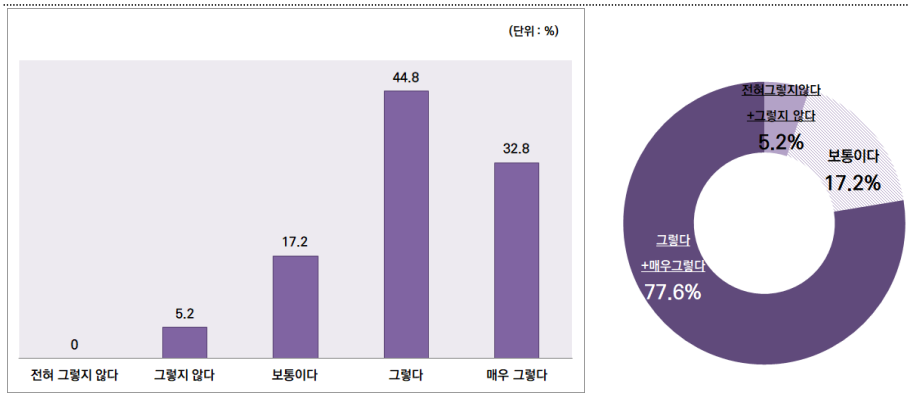
[그림 5-8] 시행계획 5년 계획기간 중 중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조사결과



2)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지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가 77.6%로 나타남(그렇다 44.8% + 매우 그렇다 32.8%)
 - ‘보통이다’는 17.2%이며, ‘그렇지 않다’는 5.2%로 낮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5-9]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지원 필요성 조사결과



3) 시행계획 수립 이후 실효성 있는 계획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기타 의견

- 설문 응답자 중 32명이 기타의견에 답변함
 - 주된 내용은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관계자들 간 상설 협의체, 중간점검차원에서의 컨설팅의 필요성, 지속적인 점검 및 실행계획의 유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실행 재원 마련을 통한 계획의 추진력 확보, 시행계획 중 일정사업에 한해 시도자율 편성의 국고지원 방식을 제안하였음
- 주요 설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설문 응답 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과 지원 관련 내용

- ✓ 실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 구축
- ✓ 시와 구군 단위 관계자들 간 상설 협의구조가 만들어져야 함. 강제성은 없지만 상시적으로 논의와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 기본계획 수립이 보다 빨리 작성되어야 함
- ✓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을 제도 및 장치 필요
- ✓ 사전 협의 단계부터 이해관계자 협의강화로 내재화 필요
- ✓ 수립 과정의 충실성에 대한 지원
- ✓ 기초단위에는 재정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중앙과 광역단위의 기초단위 자립을 위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
- ✓ 지역내 활동하는 문화인력들에 대한 파악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
- ✓ 지역 문화계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이나 라운드테이블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 지자체의 진행상황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이 부분이 이후 계획 수립 내용에 담길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될 것을 제안함

- 설문 응답 중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마련과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의견

- ✓ 실행자원 마련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없이 평가 실익에 의문이 있음. 일정사업에 한해 시도자율편성 국고지원방식 제안(예술 군특)
- ✓ 예산의 실질적 뒷받침이 필요함
- ✓ 지속적인 점검 및 실행계획의 유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 ✓ 시행계획과 예산편성 연계 또는 의무편성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음
- ✓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추후 예산확보에 상호 노력
- ✓ 계획미이행시 국비지원시 불이익
- ✓ 문화예술분야 지방재정 확충 여건 조성 필요
- ✓ 평가, 피드백 등 주기적 관리와 포상같은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
- ✓ 연도별 추진성과관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 연구가 필요함
- ✓ 예산, 조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시행계획에 반영 될 필요
- ✓ 기본계획과 별개로 시행계획은 지역 차원에서 논의, 기획, 조사 및 발굴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설문 응답 중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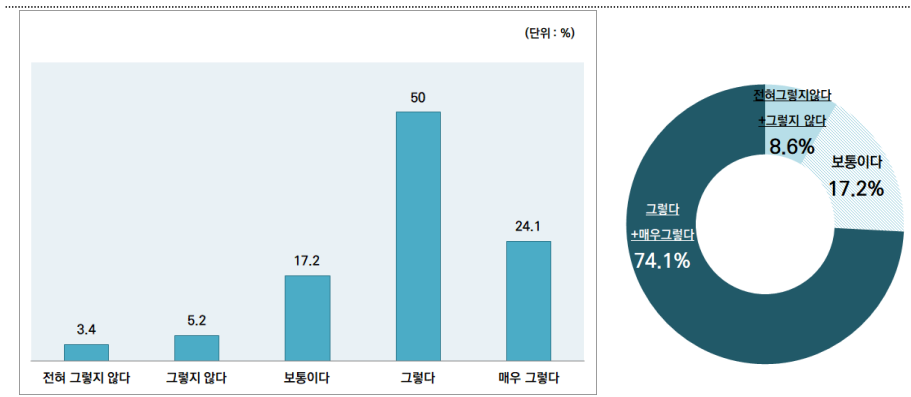
- ✓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 마련
-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과 연차별 평가
- ✓ 매년 사업의 진척도와 실행평가 후 조정 및 보완으로 사업의 연계성 확보
- ✓ 지역시행계획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견과 중간점검 차원에서 컨설팅의 필요성
- ✓ 컨설팅이라보다 지원협력이 더 적절함. 아울러 지역은 기존관성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 계도가 중요.
- ✓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이 타지역의 문제(사례)를 드러내는 위험과 비슷한 정책으로 몰리는 경향이 우려되므로(문화도시도 마찬가지) 컨설팅을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인센티브 제공 관련

1) 기본계획만의 별도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 등 기본계획만의 별도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4.1%로 나타남(그렇다 50% + 매우 그렇다 24.1%)
 - ‘보통이다’는 17.2%, ‘그렇지 않다’는 8.6%(전혀 그렇지 않다 3.4% + 그렇지 않다 5.2%)의 응답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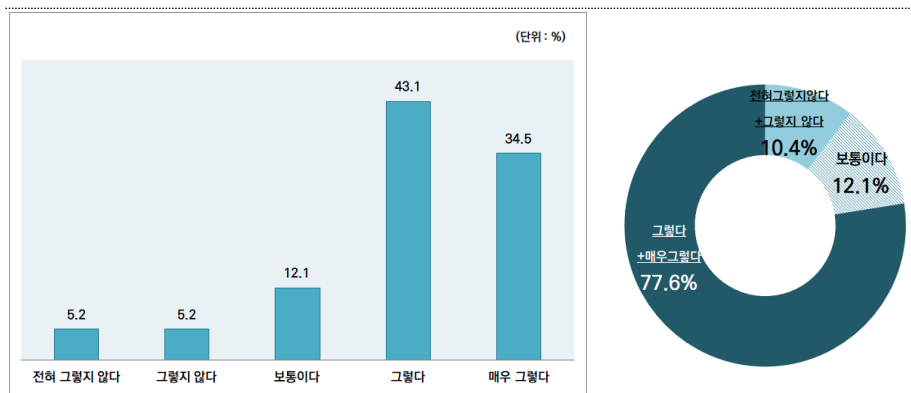
[그림 5-10] 기본계획만의 별도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조사결과



2) 정부와 광역시도간 실험적인 사업에 대한 계약 형태의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와 광역시도간 실험적인 사업에 대한 계약 형태의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77.6%가 그렇다고 응답함(그렇다 43.1 + 매우 그렇다 34.5%)
 - ‘보통이다’에는 12.1%, ‘그렇지 않다’는 10.4%(전혀 그렇지 않다 5.2% + 그렇지 않다 5.2%)가 응답함

[그림 5-11] 정부와 광역시도간 실험적인 사업에 대한 계약 형태의 사업 추진 필요성 조사결과



3)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기타의견

- 설문 응답자 중 26명이 답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인센티브 제공해야 하는 근거와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로는 차별적이고 선구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측면, 지역별 편차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권역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우수 사업에 대해서 다년 예산 편성, 지자체에서의 가산점 부여, 국비 지방비 매칭, 중앙 공모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이 제시됨
- 주요 설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설문 응답 중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됨

- ✓ 지역별 편차가 있고 특수성에 따른 사안에 인센티브의 필요성
- ✓ 광역 별 역점사업 지원
- ✓ 권역별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 ✓ 차별성과 선구적 시행계획을 통한 사업 지원 등
- ✓ 우수 사례에 대한 지원 및 다년 예산 편성
- ✓ 지자체평가 가점 부여
- ✓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필요
- ✓ 매년 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이행 실적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제공
- ✓ 우수 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 ✓ 선도사업 지원제도 마련 필요
- ✓ 차별성에대한 보상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 ✓ 현실적인 실천가능한 계획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됨

- 설문 응답 중 인센티브를 도입 방식 등에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 인센티브 등의 강제적 규정은 필요함
- ✓ 실행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 다만 기존의 나열식 상위평가방식보다는 우수만 선정하여 독려하는 방식 고려
- ✓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
- ✓ 인센티브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기초단체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것에 찬성
- ✓ 인센티브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상으로 접근할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제안한 계획들 중에서 향후 중앙정부에서 반영하는 새로운 사업 발굴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절차 등의 접근 방식도 필요
- ✓ 수립과정과 실천을 전제로 한 계획수립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예산 인센티브 부여

- ✓ 경쟁구조는 지방
- ✓ 지자체의 계획과 연계한 중앙의 방향설정. 이행척도에 대한 평가. 지자체 우수 인센티브 등 추진
- ✓ 우수 시도에 특별포상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됨
- ✓ 계획달성에 대한 지표수립 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반영 필요
- ✓ 시행계획 수립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시행 후 추진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실질적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그외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과 시행계획 연계 시 평가점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고려 필요

바.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인적 구성과 위상에 대한 의견

- 광역시도 단위에서 이름은 상이하지만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계획이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음.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적 구성과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설문함
- 설문 응답자 중 55명이 답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진흥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별, 직능별(행정, 연구, 예술 현장 등), 세대별 다양한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위상이나 인적 구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음
- 주요 설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진흥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주요 응답 의견

- ✓ 기초는 기관단체 파트너십을 이끌 리더십을 기초재단에, 광역차원은 광역재단에 주어야하고 여기에 기초와 광역의 행정부가 결합하는 광역단위 지역문화진흥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광역시장과 기초단체장 직속 문화협치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함
- ✓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력이 담보되어야 함. 현장 담당자들과 연구진들이 서로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방향을 진솔하게 논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며 각 자치구의 깊은 협력을 얻어내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자치구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함
- ✓ 인적 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권한과 결정권을 부여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됨.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작동가능한 기능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함

- ✓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문화예술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야함
- ✓ 구성 및 지속운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조례 등), 폭넓은 지역내 산학연관민 협의체 및 분과별 실행 조직 운영
- ✓ 정책거버넌스기구로서 힘 있는 의견으로 정부 차원에 충분히 제안될 수 있을 정도의 위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 행정실무자(계장급)-재단 등 중간조직-시민대표위원 등의 구성은 필수적임
- ✓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공유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필요
-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상을 지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지역문화진흥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대한 응답 의견

- ✓ 시도 및 시군 재단, 연구기관, 예술가 대표, 지역문화관계자, 행정 포괄하여 구성 필요
- ✓ 지자체별 협력위원 참여 확대
- ✓ 실질적 사업수행자 정책입안자 수혜자등으로 구분 필요 정치적 참여 배제
- ✓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중앙부처, 시군, 예술단체, 언론사, 소외계층 대표(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이주민)
- ✓ 지자체의 전문 연구자들,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시행과 향후 계획에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좋음
- ✓ 주민참여 향상
- ✓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 문화예술인은 물론이고 문화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관계인과 기관 참여 필요
- ✓ 기획과 실무간의 연결 네트워킹 반드시 필요
- ✓ 중앙과 지역의 적절한 인력구성
- ✓ 자치구별, 성별, 세대별, 사회적 약자, 문화기관 및 단체 관계자, 문화정책전문가, 관계기관 공무원 등 현장과 정책 분야를 포괄하는 인적구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 소위원회도 구성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위상에 대한 의견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문화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과 차별적이지만 기존 다른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들을 모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위상과 차별적인 내용을 가져 갈 수 있을지에 대해 주관식으로 설문함
- 설문 응답자 중 53명이 답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여타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갖

는 데 있어서는 지역단위 문화부문 최상위 계획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른 기본계획에 비해 중앙단위에서의 예산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함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지역의 여타 문화 분야 계획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와의 협의가 더욱 심화되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한 사업 위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 주요 설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타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에 관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음

- ✓ 예산 수반 여부에 따라 다른 기본계획과 차별성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지역분권과 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므로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간 문화신장의 불균형을 수평적 형태로 맞추어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기본계획이 기존의 계획과 꼭 모두 차별화되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기존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는 부분과 새로운 부분(다음 단계) 모두 담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 ✓ 지역문화(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유산 문화산업) 상위계획으로서, 지역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방향 중심), 하위 시행계획(예술진흥, 생활문화진흥, 문화유산 계승 활용, 문화산업육성)이 수립되는 체계가 필요
-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실한 차별적인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광역시별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계획들의 통합이나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야 함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 지역의 여타 문화 분야 계획과 차별성을 갖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응답 의견

- ✓ 광역단위 시행계획이 지역마다 차별성을 지니려면 기초단위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초단위는 전문인력 부재,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여건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광역단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기초단위와 협의하여 지역 안에서 필요한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광역지자체의 문화예술중장기발전계획이 별 차이 없이 별도로 수립되고 있는데 그 둘을 통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 시행계획 수립도 중앙의 예산 지원 하에 일괄용역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며 수립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 사업 추진기관이 지자체 보다는 문화재단에 부담을 과하게 주지 않으나 심을 정도로 문화재단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과 다른 점이 크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함
- ✓ 지방문화행정 관련자는 매년 교체되어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존재성이 인계되지 않고 사무분장에 명기도 되지 않는 실정으로 사전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기본계획 체계에 맞춰 온듯 함. 시행계획 수립 1년 전에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관련자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함

아. 계획 수립 및 실행관련 기타 의견

-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 시행계획 수립 전, 수립 중, 수립 이후의 과정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제언에 대해 주관식으로 설문함
- 설문 응답자 중 50명이 답변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되,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 시행계획 수립 중에는 착수 시점, 중간보고 시점, 최종보고 시점에서 광역 단위 계획수립 주체 간 권역별 의견교류가 가능한 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수립 이후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의무감을 갖고 계획의 시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연도별 성과관리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성과관리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주요 설문 응답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시행계획 수립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한 기타 의견

- ✓ 수립 전 충분한 안내 및 시행계획 작성 가이드 라인 배포 필요, 수립 중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 점검 필요
- ✓ 계획의 법정 수립연도 이전에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이 시도에 시달되어 지방에서도 1년 전부터 예산 등 준비할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
- ✓ 지자체간의 소통 시간 마련 필요
- ✓ 계획수립은 1년 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상위정책과 유사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 시행계획 수립 전 각 광역시도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해야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 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에 대한 기타 의견

- ✓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로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 지자체는 주민의견 수렴하여 시행계획 수립
- ✓ 문화체육관광부는 열악한 지자체의 문화행정을 고려해서 인력 및 예산, 각종 행정자원을 포함하여 계획수립의 과정에 대한 종합적 지원책을 고려해야 함
- ✓ 아직 지역의 시군구 단위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업무 중요성이 부족함. 이를 정부 차원에서 계속 독려하여 필수적인 지역의 의견 수렴 및 계획 수립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관심 유발 조치(포럼 또는 실제 공무 관계자 간 간담회 지속 진행 등)가 필요
- ✓ 미래전략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아카이브 필요

- 시행계획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기타 의견

- ✓ 지역 본연의 차별적 대표 사업 지원시스템 마련 건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시행단계에서 중앙부처 관심과 참여 필요, 실효성 있는 계획은 실행성과에 달려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평가보다 재정지원과 함께 컨설팅단 운영 필요
- ✓ 지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광역에서 기초단위로 시행 운영될 수 있는 의무적인 조항 수립 필요
- ✓ 제3차 계획은 반드시 2024년에 수립(정부, 지역 모두)(잃어버리는 1년이 없게 하기 위해). 2024년 6월-12월에 모든 지역과 정부가 동시에 계획 수립
- ✓ 지난 지역토론회도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자리였음. 이후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 중앙 정부와 의견을 나누는 중간과정과 이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 계획에 담겨야 할 피드백 등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으로 보임
- ✓ 지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컨설팅이 필요하지만 컨설팅단 구성에 반드시 지역을 안배 하고. 컨설팅이 평가보다는 지원의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

제2절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의의와 추진 방향

1.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의의

-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화진흥체계가 구축되고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확대되어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체계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진흥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직적, 자원적 측면에서의 지원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음

〈표 5-3〉 지역문화진흥체계의 개념과 내용

구분	개념	내용 및 예시	
법적 체계	지역문화 지원 및 활동과 관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부여의 근거가 되는 것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조례 등 - 조직 설치, 계획 수립, 인재 양성 등 명시	
조직 체계	지역문화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단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지자체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재단, 문화시설 등	
자원 체계	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조직이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투입 연료의 역할을 수행	인적자원	민간 문화 활동가, 문화 전문인력, 지역문화 단체 및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
		재정자원	공공재원, 시장금융, 기업메세나, (크라우드)펀딩등
		지식자원	지역문화와 관련 정보·지식·과학·기술 등

-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통해 중앙단위에서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에서는 각종 조례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조직체계에서도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정책관, 지역문화과,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에는 문화예술과,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자원체계에서도 지역문화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재정 자원이 마련되며, 지역문화예술 데이터와 실태조사로 각종 지역문화정보 및 지식이 구축되고 있음
- 중앙 차원, 광역 시도 차원, 시군구 차원의 지역문화정책체계 구축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은 지역문화정책체계의 법적 체계, 조직체계, 자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한편으로는 법적체계, 조직체계, 자원체계가 심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 중앙차원, 광역 시도 차원, 시군구차원으로 지역문화진흥체계가 확대되고 있음

2.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 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자치, 포용, 혁신의 가치와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함
 - 시행계획은 위의 방향에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담아내는 ‘과정으로서의 계획’과 지역의 현안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서의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 문화 자치의 관점에서 내용적으로 상향식의 계획 수립을 통해 중앙 중심적인 데에서 지역중심으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를 모색함
 - 중앙은 지역의 편차에 의해 차이가 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포괄적인 정책 방향과 계획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지역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실행을 책임지게 됨
 - 시행계획은 지역을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지역민의 입장에서 문화로부터 어떤 기여와 혜택을 원하는 지를 답아야 함
- 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진흥을 꾀하기 위해서는 계획 간의 통합적인 접근과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적 접근이 요구됨

- 계획 수립에 있어 장르별, 계획별, 부문별 단순 총합이 아닌 지역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방식(place-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역에 중심을 둔 광역시도 간,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수평적 체계로 변환함
- 계획을 지역을 중심에 두고 문화와 연계된 교육, 환경, 복지, 경제, 여가 등 문화를 중심에 둔 지역발전을 담는 정책 도구로 활용함
- 계획을 수립을 통해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함
 - 문화의 내재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연계·통합화하는 함으로서 지역 내 문화의 pie를 키우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산을 통합적으로 접목시켜 문화경제의 지역 가치사슬을 창출함

제3절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을 위한 정책 제언

1.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

가. 기본구상-시행계획-토론회의 3단계 과정으로 계획수립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따라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방향, 대상, 사업을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process)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결과물로서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청사진이기도 함
 - 위의 관점에서 계획 수립에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준비 시간이 주어진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방식이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방법이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형식을 취하되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향식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계획 수립 과정을 3단계로 구성하여 지역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지역 중심의 시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체계를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와 자치단체가 전 과정에서 협력하면서 전체적으로 3단계로 계획수립 체계를 만들 수 있음. 1단계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의 기본구상을 작성 및 공유하고, 2단계에서 위의 기본구상에 기초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역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함. 3단계에서는 시도별 시행계획을 공유하는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과 지역의 시행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 및 지원 사항을 확인함

- 기본구상은 미래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과 목표를 담는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음. 지역에서는 기본구상을 만드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과 준비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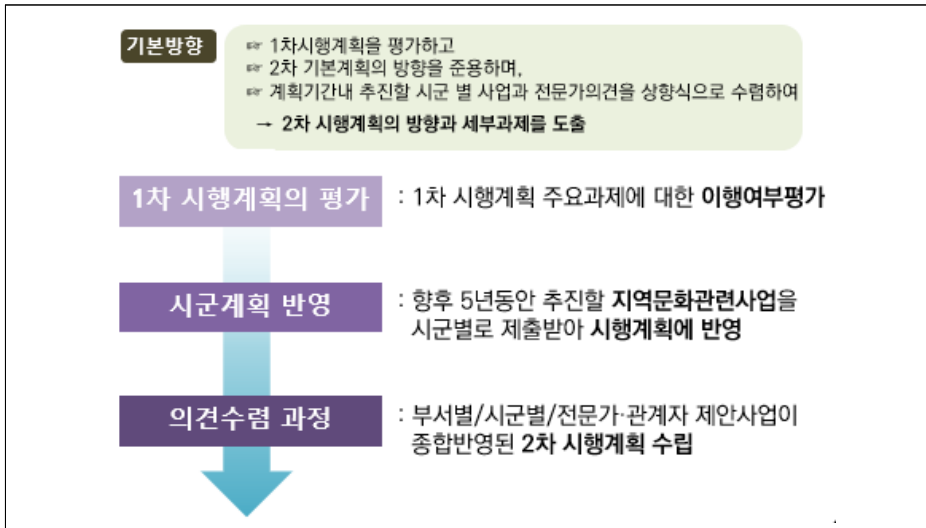
- 3단계 계획수립에 따른 기간 설정은 기본구상에 6개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6개월, 권역별 토론회에 3개월의 시간이 최소한으로 필요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본래 취지에 맞는 충실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와 의견수렴, 지역 중심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3단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구상에 6개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6개월, 권역별 토론회에 3개월의 시간은 최소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나. 통합적 계획수립을 위한 체계 마련

- 17개 광역시도와의 통합적 협력적 구조 속에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17개 광역시도가 개별 용역이지만 협의체와 같은 구조 속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함
 - 시행계획을 개별 광역시도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차후에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계획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기본구상-시행계획-토론회의 3단계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수 시점, 중간보고 시점, 최종보고 시점에서 광역단위 계획수립 주체와 시군구 관계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음
 - 현재 지역에서 시행계획 수립에 투입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고 광역시도마다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심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계획 수립 방식으로는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연구원의 경우, 문화정책 담당 연구 인력은 1~2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며 광역문화재단의 경우, 정책연구팀을 두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자체 연구 역량을 갖추지 못함
- 현재의 「지역문화진흥계획기획단」에 실무 인력을 추가한 임시 전담조직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
 - 이는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에서도 많이 언급된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지역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반면 계획 수립의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것을 응답하였음. 이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존의 지역문화진흥계획기획단의 실무 인력의 보강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광역시도, 광역시도-시군구간 의사소통을 공문형태로 하고 있어서 원활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음. 특히 지역의 문화관련 담당 책임자가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바뀌는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계획 수립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이를 지역문화진흥계획기획단이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계획 수립에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명시하여 상향식의 참여가 확보되고 과정으로서의 계획이 실효적일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
 - 지역에서의 시행계획 수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이 이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시군구의 계획 반영, 전문가집단 중심의 자문회의나 공청회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서는 계획 수립 경과에서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를 거쳤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적 의미나 내용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함.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의 지침에 공청회, 기초조사(설문조사) 및 FGI 등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절차를 명시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그림 5-12]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과정



- 지역 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적극적 의미의 참여가 요구됨. 따라서 계획 수립에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명시화하여 위의 참여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함

2.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 마련

가.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마련

- 계획이 제대로 이행 가능하도록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계획의 이행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차후의 계획 수립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시행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므로 계획 수립 이후 이행 정도를 확인하고 중간에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함
 - 지역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이의 실행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신의성실에 맡기는 상황임. 이와 같이 법정계획이지만 법에 따른 “형식”적 행위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컨설팅, 중간평가를 비롯한 평가 등 일련의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임

- 평가 개념이 강할수록 평가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벌칙이 뒤따라야하기 때문에 평가의 성격과 의도를 분명히 정해야 오해의 소지가 적을 수 있음
-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연도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시행 계획 수립 이후에는 광역지자체장이 의무감을 갖고 계획의 시행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연도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장치로 판단됨. 모니터링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광역시도에서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전체 시도와 공유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낮은 수준의 평가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음
 -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도 있음. 컨설팅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며, 내부 기준과 지침, 워크숍 등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임
 - 위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지표위주의 줄 세우기 평가(evaluation) 보다는 지역의 계획에 대한 자기 기술(self-descriptions)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자문단이 종합적 진단(assessment)을 해서 해당 광역시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컨설팅 내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중간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 현재 “5년”이라는 기간이 미래 문화정책 환경 예측 측면에서 너무 길고,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됨. 따라서 5년 계획 기간 중 중간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중간 평가 제도는 시행계획의 조정 차원 뿐 아니라 시행계획의 이행 모니터링 차원에도 의미가 있음 또한 중간평가 결과를 향후 시행계획 수립에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 대한 부담으로 더욱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 중간평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위의 모니터링의 연장선상에서 자체 평가 형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어느 경우가 되었든 평가 원칙과 방향, 평가 지표와 방

- 법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시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계획 수립에서의 참여 못지않게 계획의 실행과정에서의 평가에 시민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평가위원들에 대한 이름도 평가서에 올라야 책임감 있는 평가가 나올 것임

나. 여타 문화관련 기본(시행)계획과 차별적인 사업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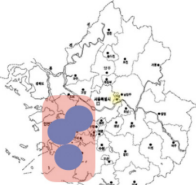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지역의 특수성과 자생력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모델 도입을 고려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약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지역이 다른 계획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을 시행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사업 모델 및 전략 과제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문화 분야에서는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협의의 문화 분야는 13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위의 다른 문화계획과 차별화되면서 지역이 문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략과제 및 사업모델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 계약 및 협약 방식의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함
 -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 정부와 광역시도 간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등에 대해 계약이나 협약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전자는 지역관점에서, 후자는 국가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추진을 검토함
 - 선도적이고 혁신형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여 다년도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협약에는 사업의 철학과 방향, 과정 체계, 핵심 성과지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아래의 프랑스 사례처럼 지역의 현안과제를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어 일정한 기간과 일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프랑스의 실험적 방식의 문화지방분권 프로토콜(규약)

- 지방자치단체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자 프랑스는 2001년 실험적 방식의 문화지방분권 프로토콜(protocoles de décentralisation culturelle à titre expérimental)을 도입함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 동안 계약을 맺어 문자 그대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방식으로 3년의 실험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더 이상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 계약 및 협약 방식의 사업모델 추진에 있어 인센티브 검토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틀 속에서 계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를 통해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계획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어떤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한 지를 탐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센티브를 제공은 차별적이고 선구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측면, 지역이 갖는 편차와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권역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 설문 응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 우수 사업에 대해서 다년 예산 편성, 지자체에서의 가산점 부여, 국비 지방비 매칭, 중앙 공모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이 있을 수 있음
- 구체적인 가능한 사업모델로 광역형 협력 사업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광역시도 간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협력 사업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지역 문화권 기반 공동협력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그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많은 공모 사업들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단일 지자체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력,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현안 해결, 역사·지리적 특성에 따른 문화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을 추진함

- 광역시도 간 협력사업은 중앙에서 필요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우와 광역시도 간 필요에 따라 광역시도가 협력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전자의 경우 중앙은 광역시도에 관련 요구되는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필히 제시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중앙은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관련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광역시도와 협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표 5-4〉 광역형 지역문화 협력사업 모델

〈Hub & Spoke 형〉 생활권 중심의 거점-주변지역 연계	〈권역형〉 유사한 역사/지리적 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 내 소지역간 문화협력	〈광역연계형〉 유사한 역사/지리적 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 간 문화협력
 거점지역의 기능과 역량 공유를 통한 주변지역 문화발전 공동의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유사한 문화특성을 가진 지역간 협력 (사례)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유사한 문화특성을 가진 광역지자체간 협력 (사례) DMZ 평화둘레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연구」

3. 시행계획의 위상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가. 지역관점에서의 시행계획 위상 정립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위상
 - 기본계획의 경우, 지역문화과가 중심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개별 과와 타 부처의 소관업무들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함. 이는 지역에서 시행계획에 어느 범위까지 사업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다른 계획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 등 시행계획의 위상과 연결되어 있음

- ‘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법」 제8조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문화 분야의 총괄적 기능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 범위를 넘어선 범부처 계획의 성격을 지님. 문화기본법 6조에 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중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음⁷⁾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위상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활용

현재 문화분야에서는 37개 법률 중 27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문화콘텐츠 분야를 제외한 **협의를 문화 분야는 13개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새 예술정책,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문학진흥 기본계획, 박물관,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등 영역별 중 단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문화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과 차별적임

법적근거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를 통해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지역문화 활성화가 포함된 문화 진흥 전반에 관한 5년 단위 국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최상위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5〉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의 범위

구분	기본계획의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문화기본법 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구분	기본계획의 내용
문화 기본법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을 중심에 둔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은 중앙과 지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앙은 행정수도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함.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장소와 지역성을 존중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과의 접목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위상과 역할

- 지역에서는 문화예술, 생활문화, 지역문화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위상이나 다른 여타 계획들과의 차별성을 지역에서는 인식하기가 어려움

〈표 5-6〉 광역시도에서의 문화관련 주요 조례 제정 현황

	지역문화 진흥 조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생활문화 진흥 조례
강원	○	○	-
경북	-	-	-
대전	-	○	-
세종	-	○	-
경기	-	○	○
광주	-	○	○
부산	○	○	-
울산	-	○	-
경남	-	-	-

	지역문화 진흥 조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생활문화 진흥 조례
대구	-	○	○
서울	-	-	○
인천	-	○	○
전북	○	○	-
충북	-	-	-
제주	-	○	○
전남	-	○	○
충남	-	-	-

- 위와 같이 지역에서는 지역문화진흥조례, 문화예술 진흥 조례, 생활문화 진흥 조례를 통해 각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각각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분야가 서로 중복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기본법이 2014년에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지역문화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문화인력 양성, 문화가 있는 날로 제한적임. 하지만 조례에서의 명시된 것과 달리 실제 광역 시도의 시행계획에서는 가능한 지역문화정책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시행계획 자체의 위상이 약함

〈표 5-7〉 조례에서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문화예술진흥계획의 범위

구분	계획의 내용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의 시행계획	1. 지역문화진흥정책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상의 문화예술진흥계획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구분	계획의 내용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경기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의 생활문화진흥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생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지역문화정책의 기본 종합계획이라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범위를 생활문화,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문화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정의에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주로 생활문화와 문화도시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분야, 관광산업, 인문학, 국제문화교류의 사업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2조에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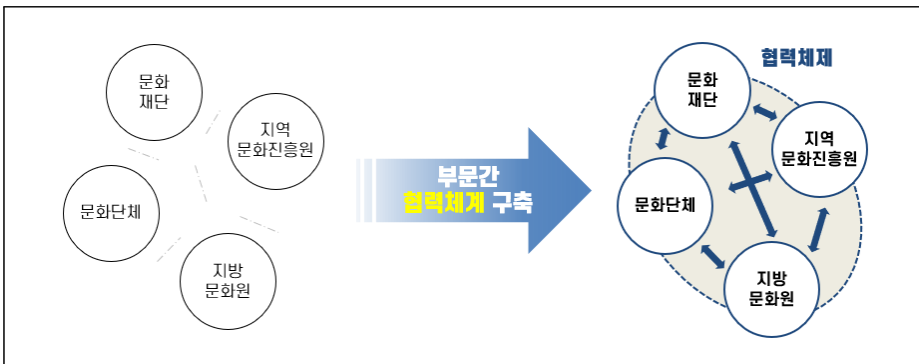
- 지역문화 주체(조직)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역 안에서 각 조직들이 서로 연결성을 확보하고 기능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중요함
 -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이해당사자간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수평관계의

협력, 연계 가능한 구조로 재편하고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기본계획 수립으로 중앙정부-광역시도 간의 지역문화진흥정책 외부화 과정은 잘 만들어져 있다면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내에서 계획을 내실있게 계획을 실행하는 내부화과정을 더욱 탄탄히 만들어야 할 과제가 있음



- 중앙, 광역시도, 시군구로 지역문화정책 체계 구축이 확대 및 심화되고 있음. 2차 시행계획을 통해 중앙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 단위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함

- 기본계획의 경우, 지역문화과가 중심이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문화체육관광부 개별 과와 타 부처의 소관업무들로 구성되어 있음. 타 부처 소관 업무를 논외로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차원에서 종합, 조정, 연계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함

- 중앙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는 기존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에서 여타 문화 관련 법정 계획들 속에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안의 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자문기능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중앙단위의 지역문화진흥위원회는 지역의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금 보다 위원을 확대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 분야별 대표성도 강화해야 할 것임
- 지역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됨
-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과 광역시도의 시행계획에 이어 시군구 단위까지 시행계획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음. 광역시도의 시행계획 중 시군구와 연계 및 협력이 요구되는 안에 대해서 광역시도가 시군구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광역시도와 시군구 간 정책 이슈별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위한 정책실행협의체 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광역 시도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형태를 통해서 가능할 것임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인적구성은 지역문화와 관련한 이해관계에 있는 계층별, 직능별(행정, 연구, 예술 현장 등), 세대별 다양한 구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위상이나 인적 구성에 관한 별도 조례를 만들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위원과 같은 실질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김경섭(215), 한국 지역문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한국사상과 문화, 81집.
- 노영순·정보람(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2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김경섭(2016), 한국 지역문화정책의 한계와 과제, 한국사상과 문화, 81.
- 신정규(2018),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방안과 문제점, 법과 정책, 2(2).
- 오재환(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시민 문화 활성화의 계기, BDI 정책포커스(239).
- 김규원(2014), 지역문화매개인력 현황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문화재생 정책 및 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8. 12), 문화비전 2030.
- 문화체육관광부(2020. 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7), 지역문화사업 지원체계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19),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자원 확충에 관한 연구.
- 연수현(201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 이흥재(2013), 지역 문화정책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적 공진화: 시론,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15권 2호.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2020), 2017~2019 지역문화 이슈-트렌드분석 결과집.
- 조광호(20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조광호(2013), 문화를 통한 지역 구도심 재생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OECD(2018), culture and local developmen.
- Vijayendra Rao and Michael Walton(2004), Culture and Public Action: relationality, equality of agency, and development, World Bank.

- Stolarick, Denstedt, Donald, and Spencer(2010), Creativity, Tourism and Economics Development in a Rural Context: the case of Prince Edward County,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5(1/2).
- M.A. Brennan, Courtney G. Flint, A.E. Luloff(2009), Bringing Together Local 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Findings from Ireland, Pennsylvania and Alaska, Sociologia Rulalis, Volume49, Issue1, 97-112.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 of the 2nd Regional Culture Promotion Plans

Since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January of 2014,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were required to establish a master pla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ster plan) and an implementation pla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lementation plan) every five years. Following the first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2015-2019),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second master plan in February of 2020. Since then, each metropolitan city/province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second implementation plan, which is a binding, legal oblig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contents of the seco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established and submitted based on the second master plan, to analyze the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plan for local culture promotion, and to suggest specific plans for preparing a promotion system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plementation plans of 16 metropolitan cities, first, the keywords presented in the vision of each city's implementation plan are emphasizing 'values targeted', 'states to be reached through businesses', and the 'processes'. Second, nearly all the implementation plans had strategies to prepare an institutional device for local culture promo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hird, in terms of regional cultural governance, a basic cultural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a regional 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plan integrated cooperation with each Si/Gun/Gu. Fourth, as well as expanding regional cultural finances, they were contemplating ways to increase the democracy and autonomy of budget planning, and how to utilize cultural experts nurtured in the region. Fifth, it commonly includes projects that attempt to culturally solve local issu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Living Lab.

The implementation plan contains most of the information on the master plan. Information that is not included in the master plan, or major contents that have not been handled in relatively great importance, but are included in the implementation plan of a few metropolitan cities, are as follows. Information, such as how the regional cultural art industry shall prepare for the post-COVID-19, non-face-to-face cultural environment, support policies for youth in regional cultural arts, and establishment of data and statistical evidence-based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are all emphasiz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plan.

Policies for efficient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reg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process is composed of three stages to maximize regional participation and build a system to establish a regionally-oriented implementation plan. In the first stage, it creates and shares the basic concept of the master plan that establishes the overall direction. In the second stage, based on the above basic concep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stablishes a master plan and regional implementation plans. In the third stage, regional discussion meetings are held to share implementation plans for each city and province and to confirm cooperation and support for implementing the master pla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implementation plan of the region.

Second, since the implementation plan is a five-year pla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fter the plan is established and to modify and supplement it in the middle. An evaluation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the proper implantation of the plan to identify the degree of implementation and problems of the plan. This can reduce requisite time for future planning.

Third, there is an evaluation that the structure making use of the individ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is weak in the master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s and strategic tasks that can contain projects that are the same as those in other plans in different regions in the implementation plan. This will allow us to discover and pursue business models in the form of contracts and agreements for strategic tasks and business models that can benefit the region from culture as differentiated from other cultural plans created in the region.

Keywords

Implementation Plan, Regional Culture, Governance, Autonomy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부록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17개 광역시도의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의견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조사는 위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의견은 향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라도 빠지면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없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국가정책 수립 및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 상 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경 진

손 유 진

회송방법

아래 링크된 곳으로 누르면 조사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과정을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응답내용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응답은 **11월 26(목)**까지 해주시고 **응답링크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메일로 회신 또는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손유진 (02-2669-8928/ sonyj@kcti.re.kr)

성함		휴대폰연락처	
소속		직 책	
주소			
이메일			
광역시도 구분	① 강원 ② 경기 ③ 경남 ④ 경북 ⑤ 광주 ⑥ 대구 ⑦ 대전 ⑧ 부산 ⑨ 서울 ⑩ 세종 ⑪ 울산 ⑫ 인천 ⑬ 전남 ⑭ 전북 ⑮ 제주 ⑯ 충남 ⑰ 충북		
직무분야	① 행정직 ② 연구직 ③ 재단 등 지원조직 ④ 기타()	근무연수	_____년

Q1. 다음은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준비와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해당 광역시도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수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해당 광역시도에서 제반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광역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계획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Q2. 다음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는 광역시도 단위 시행계획만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군구까지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⁸⁾	①	②	③	④	⑤
2. 현재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작성에 있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광역시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건과 준비정도에 편차가 많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작성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제반 이해관계자들 간의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되어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동시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Q3. 아래의 시행계획 수립 방식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본계획 발표 이후 광역시도의 실행계획 작성의 현행 방식
- ② 시군구에서 시행계획 수립→광역시도 시행계획수립→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 수립의 상향식 계획 작성 방식
- ③ 일정한 기간 (6개월 내지 1년) 내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작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동시 작성하는 방식
- ④ 기타()

Q4. 다음은 시행계획 수립 이후 실효성있는 계획 실행을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행계획 5년 계획기간 중 중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2. 시행계획 추진에 대한 중앙(문화체육관광부)의 컨설팅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기타 의견	()				

Q5. 다음은 법정계획으로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광역시도간 협력사업 등 기본계획만의 별도 사업을 기획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2. 정부와 광역시도간 실험적인 사업에 대한 계약 형태의 사업 추진 필요성	①	②	③	④	⑤
3. 기타 의견	()				

8) ※ 참고: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에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기본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Q6. 광역시도단위에서 이름은 상이하지만 지역문화진흥협력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계획이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적 구성과 위상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Q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국가차원의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문화권 신장을 위한 계획 수립이라는 점에서 다른 부문별 기본계획과 차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른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사업들을 모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위상과 차별적인 내용을 가져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Q8. 본 연구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언하실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견, 시행계획 수립 전, 수립 중, 수립 이후의 과정과 지원제도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집필내역

연구책임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교수: 연구총괄(제1장~제5장)

공동연구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손유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제5장 제1절

2차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발행인 김 대 관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SBN 978-89-6035-857-7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8>

A Comparative Analysis and Its Implication of the 2nd Regional Culture Promotion Plans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0.e48>

Jung, Sang Chul